

새로운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인재육성 발전 방안

손유미 오영균 고경훈
현영섭 진미석 송창용

머 리 말

창의적 인적자원이 개인과 조직, 지역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은 ‘균형’ 발전에 집착한 나머지 각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공유의 비극’ 현상을 낳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집행 과정으로 인해 지역의 중앙정부 의존도를 심화시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한다면, 그 중심에는 당연히 ‘사람에 대한 투자’ 즉 인재 육성 정책이 있어야 한다. 2002년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의 경우 지자체의 대응투자 금액의 증가, 지자체의 전담조직 신설, 지역의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을 위해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고민하는 장의 형성 등은 정책의 소중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8년도 새로운 정책기조에 따라 과거 균등방식을 지양하고 공모방식을 통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의 투자와 관심을 견인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변화와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기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년 기본연구 2008-52번이며, 손유미 박사가 책임자로서 진미석 박사, 송창용 박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오영균 교수, 현영섭 교수, 고경훈 박사가 외부 연구진으로 함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가 지역의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응원하며 연구과정에 참여해주신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09년 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권 대 봉

목 차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필요성과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 4

1. 연구 내용 · 4

2. 연구 방법 · 7

3. 용어의 정리 · 10

제2장 지역인재육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1절 정책 현황 · 11

제2절 주요성과 · 23

제3절 문제점 · 27

1. 문제점 · 27

2. 해결 과제 · 32

제3장 새로운 지역 정책과 인재육성

제1절 지역인재육성정책을 둘러싼 환경진단 · 37

1. 사회·경제적 환경 · 37

2. 법·제도적 환경 · 39
3. 정책적 환경 · 44

제2절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 46

1. 정책의 기초 · 46
2. 정책의 기본 방향: 광역화, 특성화, 자율화, 동반발전 · 47
3. 지역발전정책 추진 내용 · 49
4. 시사점 · 55

제4장 지역인재육성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제1절 비전과 전략 · 57

1. 비전 · 57
2. 기본 전략: 지자체의 전략기획 능력 제고 · 59
3. 기본 전략: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64

제2절 정책 과제 · 66

1. 추진체계 정비 · 66
2. 인적·물적 정책 인프라 확충 · 70
3.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특성화 · 72
4. 사업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74

제3절 영역별 로드맵 · 82

1. 추진 체계 정비 · 82
2. 정책 인프라 확충 · 82
3.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특성화 · 83
4. 사업 성과 관리 및 우수 사례 발굴 확산 · 83

SUMMARY · 87

참고문헌 · 91

〈표목차〉

<표 I-1> 지역인재육성 중장기 발전 계획 추진 과정 · 9

<표 II-1> 시범운영단계 주요 추진일정 · 14

<표 II-2> 2008년도 지역인재육성 우수 사업 · 20

<표 II-3> 2008년도 지역인재육성 우수 사업의 강점 · 21

<표 II-4> 2008년도 지역인재육성평가 우수 항목 · 22

<표 II-5> 지자체별 지역인적자원 추진체계 현황(2008. 12월 현재) · 25

<표 III-1>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평생교육법 비교 · 41

<표 III-2> 지역인재육성 정책의 SWTO 분석 · 46

<표 IV-1> 사업추진주체 중심모형의 평가기준 및 항목(안) · 78

<표 IV-2> 지역인재육성 특성화 사업(예시) · 84

[그림목차]

- [그림 II-1] 시범운영 단계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예시 · 13
- [그림 II-2] 중앙-지방간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체제도 예시 · 15
- [그림 II-3]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체제 예시 · 16
- [그림 II-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영역 · 17
- [그림 II-5] 시·도별 RHRD 추진체제 구축 현황 · 18
- [그림 II-6] 2008년 지역인재육성사업 구성 · 20
- [그림 II-7] 시기별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주요 추진사업 · 23

- [그림 III-1]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과 전략 · 48

- [그림 IV-1] 지역인재육성 비전과 전략 · 65
- [그림 IV-2]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성과관리 단계 · 75
- [그림 IV-3] 사업평가 모형 · 76
- [그림 IV-4] 지역인재육성의 5년 후 청사진 · 84

【요약】

1. 연구 개요

-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가 개인과 조직은 물론 지역과 국가경쟁력 결정의 핵심 요소임.
 - 지역의 자생력 증대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적 자원의 발전 전략이 필요함.
- 이러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가시적인 정책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어 왔음. 2002년 처음으로 3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정책 사업을 시도한 이후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지정 등 정책의 인프라 구축과 각종 사업의 활성화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오고 있음.
- 그동안 추진된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인적자원개발 역량을 축적하는 데 일정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특히 지자체의 대응투자 금액의 증가, 지자체의 전담조직 신설, 지자체장의 관심도 증가, 지역의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을 위해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고민하는 장의 형성 등은 정책의 소중한 성과임. 그러나 향후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
-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함. 그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던 재정지원 방식을 공모를 통한 자율경쟁 방식으로

전환.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의 궁극적 지향이 지자체의 서열 매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의 자율적 역량 강화를 견인하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판단

- 또한 정부의 ‘새로운 지역 발전 정책의 방향과 전략’이 발표(2008.7.21)됨에 따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역할에 대한 후속 작업 마련 필요성.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① 지방분권 ② 특화 ③ 협력과 경쟁 ④ 광역경제권중심의 4대 기본방향 실현을 통해 모든 지역이 상생,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살든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을 형성할 것을 천명
- 따라서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의 그동안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
 - 그동안 정책의 시행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지역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
 - 이에 ‘광역경제권’이라는 새로운 추진체계가 구성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를 포함한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담아내는 정책과제의 발굴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변화와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기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

- 중장기 발전방안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당사자들과 전문가들과의 워크숍, 전문가회의, 정책 세미나 등을 거쳐 만들어짐.

2. 지역인재육성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가. 주요 성과

-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2002년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됨. 지역 정책의 역사를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3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시범운영기, 13개 시도 지역인적자원개발 체제의 구축을 시도한 기반구축기,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 및 프로그램 실시를 통한 활성화기, 2008년부터 균등배분을 지양하고 자율과 공모 방식을 도입한 재도약기로 정리됨.
-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통해 만들어 낸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역차원의 인식 확산 및 지자체장의 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 제고: 예산 확대와 조직의 신설
 - 12개 시도 RHRD지원센터,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등 인프라 구축에 기여
 - 시·도별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경험 축적
 -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추진을 통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광역자치단체와의 정책 파트너십 구축
 - 지역주민에 대한 학습의 기회와 취업 기회 제공
-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현영섭 2008b)

- ‘지역인재육성 기능 → 지역필요인력수급 → 지역산업활성화 → 지역발전’으로 연결되는 긍정적 강화 경로가 존재
- 기본적으로 그 동안의 지역 인재육성 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 지원을 지방에서 받아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인재를 육성하고 제공함으로써 지역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발전까지 연계되는 것으로 분석
- 또한 부가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역인재육성 지원이 지방의 대응 자금을 유도하고 지역 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발생시킴으로써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도 발생

나. 문제점

- 정책의 기획과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대별됨. 첫째 RHRD 정책의 혼재로 인한 정체성 미흡, 둘째 지역 인적자원 개발 추진 역량의 전문성 부족, 셋째 추진체계의 기능 재정립 문제, 넷째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 방식의 개선, 다섯째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의 가시적 성과 측정의 어려움.
- 직업훈련, 평생학습, 여성인적자원개발 등 관련 사업이 여러 부처의 법령(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및 재원으로 지역에서 혼재되어 추진되고 있음.
- 더구나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역에 평생교육진흥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사업영역의 중첩가능성이 가중되고 있음.

- 지역 차원의 RHRD 정책관리 시스템 부재와 거버넌스 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함.
-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성과의 계량화 부진
- 아직도 많은 시·도에서는 RHRD를 지자체 사무로 인식하지 못해 전담 부서 및 인력 배치가 미흡한 실정
- 2008년 사업의 경우,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지역의 균등 배분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탈락한 지역의 경우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과 ‘그나마 축적된’ 역량마저 사장될 위기
 - 궁극적으로 지역 스스로의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인재육성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역량이 미흡한 시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 향후 새로운 지역의 광역경제권의 거버넌스로 등장할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인재육성의 문제가 의사결정 구조 속에 주요 의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

3. 새로운 지역정책과 인재육성

창조적 인재 양성의 중요성 강조

- 창의적 인적자원이 개인과 조직, 지역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

- 지역의 자생력 증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중심의 발전 정책이 반드시 필요
 - 교육과 노동시장의 결합 강화 추세에 따른 통합적 인재육성 정책 필요
- 급격한 기술 변화로 단기간 고용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주민의 직업역량 확충 필요
 - 지역주민의 직업 역량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교육과 노동시장의 결합
 - 분권화와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 증대
- 지역 차원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요구를 지자체, 민간, 시민단체 등의 이해당사자(stakeholder)들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파악 및 해결
 - 이들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 인적자원개발 추진
 - 지역 인재육성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평생교육법의 정비
- 근거 법의 정의로 볼 때, 인적자원개발의 영역이 양성, 배분 활용 전반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라면, 평생교육의 영역은 그 가운데 이에 관련된 조직적 교육 활동에 관련된 영역이라 할 수 있음. 인적자원개발이 다소 포괄적으로 평생교육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면, 평생교육은 비교적 명시적으로 해당 영역을 법상에서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인적자원개발의 법상의 개념이 실행력을 띠기 위해서는 추진체제 역시 이러한 상위 개념에 부합하는(그리고 그의 권한을 가진) 형태로 구축되어야 하며, 그것의 하위 단위 혹은 협조 단위로서 평생교육의 추진체제와 연계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현재 법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체제의 역할은 이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함.
- 추진체제의 경우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심의기구로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것을 임의규정하고 있음. 이에 반해 평생교육법에서는 심의기구로서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는 당연규정으로, 실행기구로서 시동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구평생학습관은 각각 임의규정과 당연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 점에서 평생교육의 추진 기제가 법상으로는 더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결국, 근거 법상으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및 영역과 추진체제 간에 유기적 연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의 사업 영역이 겹치고, 각 법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와 지역평생교육협의회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 등에 어려움 발생
 - 지역 평생교육의 주요 실행 기구로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와의 소관 업무와 다소 중복될 우려 발생

□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광역화와 분권화

-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권역별로 관계 시·도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설치('09년 예정)
- 지역발전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로서 광역 거점대학 육성, 산학연 연계 활성화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촉진, 광역경제권 R&D 거점과 지역전략 산업의 연계 촉진 등을 제시

□ 수도권 규제 완화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정책 필요

- 침체된 경기 회복,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08. 10)
 -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이전 규제 완화, 공장·산업단지 입지 규제 개선,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등
- 중앙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상대적 역차별에 대한 지원을 강구함과 동시에, 지역이 자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전략 추구 필요
 -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유치·활용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발상 필요

4. 지역 인재육성 중장기 발전 방안

가. 기본 원칙: 지역의 자생적 역량의 제고를 위한 지원

- 그동안 추진되어온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등을 고려하여 지역인재육성 중장기 5개년 발전 방안을 도출함.
- 지금까지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였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중앙집중적인 사업지원방식으로 지역의 지방의존도를 높여 지역의 자생력을 저해하고 있다(고영선 외, 2009)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이명박 정부는 지역발전 정책을 광역화와 분권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지역발전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이에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이 일차적인 책임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
 - 현재 많은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재원을 제공함에 따라 공유의 비극으로 인한 자원낭비, 지방의 낮은 주인 의식, 복잡하고 경직적인 사업체계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고영선 외, 2009).
 - 이는 지방의 개발의지와 정책역량을 저상시키고 궁극적 목표인 자생력 배양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지역 인재육성 정책의 중장기 방안 수립의 대원칙은 지역의 자생력을 극대화하여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그

러나 현재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여건이나 역량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지역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역의 인식이 아직 낮은 상황에서 지역에 해당 사업을 일임하는 것은 일종의 책임에 대한 방기라고 볼 수 있음.
-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seed money 제공의 과정이라 여기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비효율의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함.
- 국가지원과 지역자립의 관계를 적절히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국가지원을 줄이고 자발적으로 지역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중장기 계획에 녹여내는 것이 필요함.

나. 정책 과제

○ 정책과제는 4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추진체계의 정비

- 중앙의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정비
- 광역경제권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체계 마련
- 지역 단위의 총괄 협의체 구성, 운영(사례: 충북)
- 지역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의 위상 및 기능 강화
- 중앙 단위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지정

○ 인적·물적 정책 인프라 확충

- 지역인적자원개발 담당자 역량 강화 (2009년부터 시작)

- 지역인적자원개발 정보 인프라 구축: rhrd-net
 - 지역인적자원개발 기금 조성(사례: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 기술진흥 기금)
-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특성화 추진
-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인재 육성 사업
 - 사업의 특성화: 경제 활성화 모델, 사회문화 혁신모델, 사회적 통합 모델 등으로 접근하되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겨냥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
- 사업의 성과 관리 및 우수 사례 발굴과 확산
- 중앙정부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성과 관리 체계를 확립
 - 사업평가 시스템의 개선
 - 지역 인적자원개발 우수 지자체장에 대한 표상(경영정보공시와 연계하는 방안)
 - 우수 사례의 홍보를 통한 확산
 - 지역 인재육성 사업의 점진적 이양

제1장 서론

제1절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가 개인과 조직은 물론 지역과 국가경쟁력 결정의 핵심 요소임.
 - 지역의 자생력 증대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적 자원의 발전 전략이 필요함.

- 이러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가시적인 정책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어 왔음. 시범 운영기('02~'03)와 기반 구축기('04~'05), 사업 내실화 및 활성화기('06~'07)를 거쳐 형성된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 성과를 기초로, 또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근본적인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방향 전환 모색이 요구됨.

2 새로운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인재육성 발전 방안

- 지역인적자원개발 예산 확보 지원
'04(550억원)→'05(50억원)→'06(100억원)→'07(100억원)→'08(100억원)
-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체제 구성
시도지사 주관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운영(강원 경남)
(다른 시도는 지역혁신협의회 산하 분과위 형태)
지역인적자원정책 총괄부서 신설(전북 인재양성과, 제주 인적자원과)
시도청과 교육청이 연계협력하여 교육지원 사업 추진(충남, 경남)
- 지자체의 대응투자 확대
'05년 21억원 → '06년 23억원 → '07년 31억원 → '08년 33억원

○ 특히 정부의 '새로운 지역 발전 정책의 방향과 전략'이 발표(2008.7.21) 됨에 따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역할에 대한 후속 작업 마련 필요성

-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의 5대 추진전략(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 정책 추진 전략 보고회의)과 인적자원개발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
-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① 지방분권 ② 특화 ③ 협력과 경쟁 ④ 광역경제권중심의 4대 기본방향 실현을 통해 모든 지역이 상생,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살든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을 형성할 것을 천명
- 5대 추진 전략에는 ①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② 신 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③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④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⑤ 기존 균형발전 시책(혁신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
- 지역 발전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인으로 인적자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전략으로 제시되지는 않고 있음.

-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가 추진해 오던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새로운 정부의 ‘경쟁’과 ‘자율’이라는 기조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역”은 지식·기술·인력이 집적(Cluster)되는 경쟁과 협력의 기초단위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
 - 그동안 정책의 시행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지역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
 - 교육과학기술부내에서도 평생교육과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영역이 중첩되어 지자체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러한 거버넌스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선결과제임.
- 이에 ‘광역경제권’이라는 새로운 추진체계가 구성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를 포함한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담아내는 정책과제의 발굴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변화와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기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가. 과거 정책의 성과와 한계 분석

○ 지역인재육성 정책의 현황

○ 정책 환경의 변화와 진단: SWOT 분석

나. 지역 발전 정책과 연계 가능한 인적자원개발 사업 영역 발굴

○ 지역의 발전과 연계된 지역인재육성 특성화 사업 발굴·추진

- 지역인재양성은 지역의 현안 및 주요 요구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지역 인적자원 형성의 문제와 주요하게 연관됨.
- 각 지역의 인재 및 인적자원의 주요 수요처를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양성 전략 및 학습 촉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학습 촉진의 기반 구축

-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학습 촉진의 지자체 책임성 담보 기제 구축
- 지역 특성화 모델에 적합한 학습 단위 및 전략 구축
- 지역인재육성 사업 주체의 학습 촉진의 역할 분담 및 연계 방안 마련

○ 지역인재육성사업 방식의 다양화

- 사업 기간의 다양화 추구
-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식의 다양화 추구
- 지자체의 역량 정도에 따라 국가 지원 및 지자체 책임의 정도를 차별화
- 개별 지자체 사업, 지자체간 연계 사업 등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화 시도

○ 지역인적자원개발 촉진자 양성과 활용 방안 모색

- 인적자원개발의 성공 여부는 궁극적으로 HRD 촉진자(facilitator) 및 실행자(practitioner)의 역량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이러한 점에서 기존 RHRD 사업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전문가 양성을 주요하게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RHRD 실행 촉진자를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됨.

다. 새로운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체계 및 인프라 구축 방안 도출

○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체제 개편

-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시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추진 체제 개편이 요구됨.

○ 추진 체제의 법제화 및 조례 제정 방안 마련

- 다양한 부처의 유사 관계법과의 긴밀한 협조 및 장기적으로 총괄적 통합 법제화 추진 고려
- 특히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평생교육법, 고용촉진법, 국가균형발전법(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 입법예고) 등의 검토

6 새로운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인재육성 발전 방안

- 기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구의 통합화 및 통합 기구의 의사 결정 권한 강화 방안 도출
- 사업 방식에 따라 광역과 기초, 중앙과 지역의 역할 분담 설계
- 지역인적자원개발 실행 및 지원 단위로서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재구상
-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한 기제 마련
 -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 및 홍보 확보를 위한 관련 정보망 구축 방안
-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지역 특수성 및 자립성 반영 기제 확보
-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 평가의 선진화 방안 모색
 - 선정, 과정, 결과 평가 및 우수 사례 평가에 필요한 평가 지표 설계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 평가와 컨설팅의 연동을 통한 과정 평가 중심의 사업 설계
 - 지역 발전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의 가시적 결과와 연동될 수 있는 평가 지표 설계
-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 체제 구축
 - 관련 중앙 부처간 사업 중복 방지 대책 마련
 - 지역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제 마련

- 지역 산업체의 적극적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기제 마련

라.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장기 발전 방안 제시¹⁾

○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의 5개년 계획(안) 제시

○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장기 비전 및 목적 수립

○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전략 및 주요 추진 과제 설정

2. 연구 방법

가. 문헌 분석

○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존 정책 분석

○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선행 연구 분석

나. 전문가 협의회

○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전문가 및 중장기계획 수립 자문가 대상의 의견 수립

- 13개 시도 지역인적자원개발 담당 공무원, 12개 시도 지역인적자원지원센터장과 연구원 등

1) 이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재육성 정책 사업으로 한정하여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다. 워크숍 개최

-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장기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진 및 관계 부처 담당자의 워크숍 진행
- 지역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워크숍 개최

라. 세미나 개최

- 주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방향과 과제
- 일시: 2008년 11월 25일(화) 13:30 - 17:00
- 장소: 교육회관 별관(1층) 한강홀
- 토론자: 김진덕(전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협의회회장), 이희수(중앙대 교수), 나병선(경북 도청 인재양성팀 팀장), 오영균(수원대교수), 강건기(교육과학기술부 잠재인력정책과장), 이성(경기도도지사 교육정책보좌관)

<표 I-1> 지역인재육성 중장기 발전 계획 추진 과정

| | |
|-----------------------------|---|
| '08. 8. 1. | 지역인재육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 수립 · 개시회의 및 중장기 계획 예상 수록 내용 추출을 위한 예비 자료 수집, 정리, 작성 |
| '08. 8. 7. | 제1차 워크숍 · 참석자: 강건기, 이필남, 진미석, 손유미, 오영균, 현영섭, 고경훈, 송창용, 노일경 외 · 주요 내용: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체성 및 목적, 추진 체계, 사업 방식 등과 관련한 집필진 브레인스토밍 |
| ↓ | 중장기 발전 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안) 도출 · 지역인재육성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배경 및 주요 추진 과제(안) 도출 작업 수행 · 집필진 브레인스토밍 & 문헌 분석 |
| '08. 8.29. | 제2차 워크숍 · 참석자: 이필남, 김영래, 강민철(제주), 류호종(부산), 손유미, 현영섭, 송창용, 노일경, 진미석 외 · 주요 내용: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 수립 |
| '08. 9.11. |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지역평생학습의 관계 정립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 참석자: 고영상(평생교육진흥원), 손유미, 송창용, 노일경 · 주요 내용: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지역평생학습의 법적, 제도적, 개념적 차이 논의 |
| '08. 9.16. ~ 9.17. |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센터장 의견 수립 · 참석자: 염돈민(강원RHRD센터), 김진덕(충북RHRD센터)외 · 주요 내용: 지역인재육성 중장기 계획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한 RHRD센터의 의견 수립 |
| '08. 9.18. |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장기 발전 계획(안) 초안 작성/ 교과부 송부 검토 |
| '08. 9.30. |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5개년 사업 계획 수집 및 분석 · 대상: 전국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 방식: 지역별 RHRD 5개년 계획안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 해당 내용 중장기 계획에 반영 |
| '08. 11.25 |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한 의견 수립 |

3. 용어의 정리

○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지역내 인적자원개발 관련기관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그와 관련된 사회규범, 네트워크 및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는 지역차원의 체계적 노력

○ 지역인재육성

- 새 정부의 국정철학인 ‘자율’과 ‘경쟁’ 중심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RHRD) 사업을 재설계한 것으로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려는 노력
- 인재육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인재정책은 기존 HRD에 R&D를 포괄하는 융합적 개념임.

제 2 장

지역인재육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1절 정책 현황²⁾

- 인적자원개발사업은 2000년에서 인적자원총괄 부총리제 및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에 관한 추진체제를 준비하면서부터 태동되었으며, HRD에 대한 개념정립을 형성하는 기틀을 마련함.
- 2001년도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도입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음.
- 그 후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크게 4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음.
 - 시범운영단계(3개 교육청 중심(2002~2003)), 기반구축단계(13개 시·도 추진체제 구축(2004~2005)), 우수사업 발굴·확산기(2006~2007)를 거쳐,

2) 여기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정책만을 분석함

- 2008년은 새로운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재도약(2008)단계에 이르고 있음.
 - ※ 명칭도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인재육성정책으로 변경

가. 시범운영 단계: 3개 교육청 중심(2002~2003)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5월 29일 제6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시범지역 추진 및 「지원단」 구성·운영-’에 대해 보고하고, 3개 교육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
 - 본 보고에서는 지역단위의 자율적 추진체제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기관간 네트워크와 추진기관간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를 예시
 - 즉 시·도, 대학, 교육청, 노동청, 중소기업청 등의 추진기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초·중등학교, 청소년 단체,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시민단체, 도서관, 직업훈련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의 관련기관 네트워크를 구성을 통해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구상을 제시함 ([그림 II-1] 참조).
- 2002년 8월 26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정부는 5년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인적자원개발관련 연구기관 등을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함.
- 2002년 10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시행된 부산, 광주, 충북 시범지역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RHRD추진주체는 교육감보다는 시·도지사가 타당.

-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 근거 신설을 위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

[그림 II-1] 시범운영 단계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예시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2. 5.29).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 -시범지역 추진 및 「지원단」 구성·운영-. 제6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제4호 (심의) 안건. p.2. 이성(2007), 직선 교육감시대 교육청의 RHRD 정책가능 강화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p.40 재인용.

-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시범운영단계 주요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표 II-1>과 같음.

<표 II-1> 시범운영단계 주요 추진일정

| 시범운영단계 주요 추진내용 | 연월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차 인적자원개발회의 -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 심의·의결 -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 추진 및 「지원단」 구성·운영 | 2002.5.29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지역 선정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단」 회의, 설명회, 공모절차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부산, 광주, 충북 등 3개 광역자치단체를 시범지역 선정 | 2002.10.2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업무보고: 2003. 4. 9 - 지역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으로 지역발전 촉진 | 2003.4.9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지역별로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서」 제출 - 지역사회 유관기관 공동으로 공청회 및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 2003.9.3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지역 운영성과 발표 세미나 개최 - 16개 자치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 | 2003.11.7-8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적자원개발 확산 전략 마련 공청회 개최 - 「RHRD 시범지역 운영성과 분석 및 확대발전 방안」 정책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지역관계자 및 유관기관 대상 여론 수렴 | 2003.12.2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1.14),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축 확대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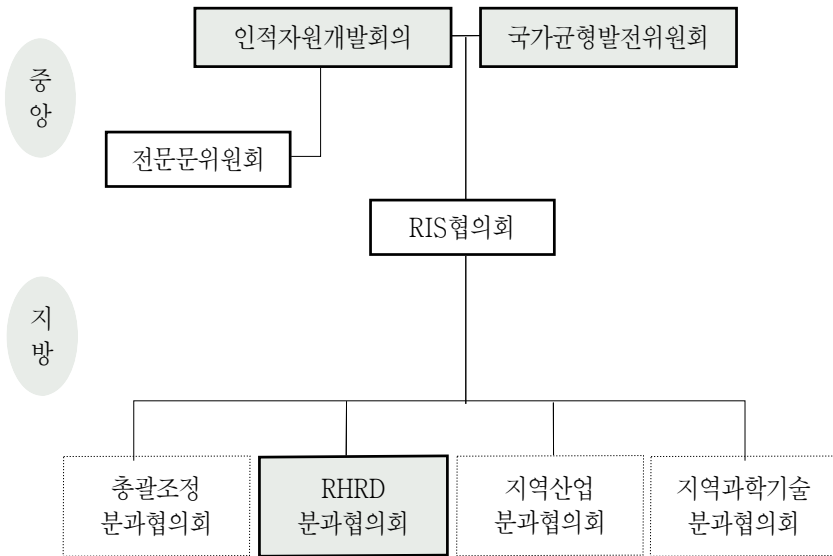
나. 기반구축단계: 13개 시·도 추진체제 구축(2004~2005)

○ 2004년 1월 14일에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RHRD 추진체제 구축 확대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고, 13개 시·도(수도권 제외)에 지자체·대학·산업체·연구기관 및 교육청 등이 연계한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를 구축

- 본 보고에서 제시된 중앙-지방간 인적자원개발 정책추진의 협력강화를 위한 체계는 [그림 II-2]와 같음.
- 즉,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사업 총괄 조정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협의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을 자체 수립하고 관계기관간의 역할분담을 체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림 II-2] 중앙-지방간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체제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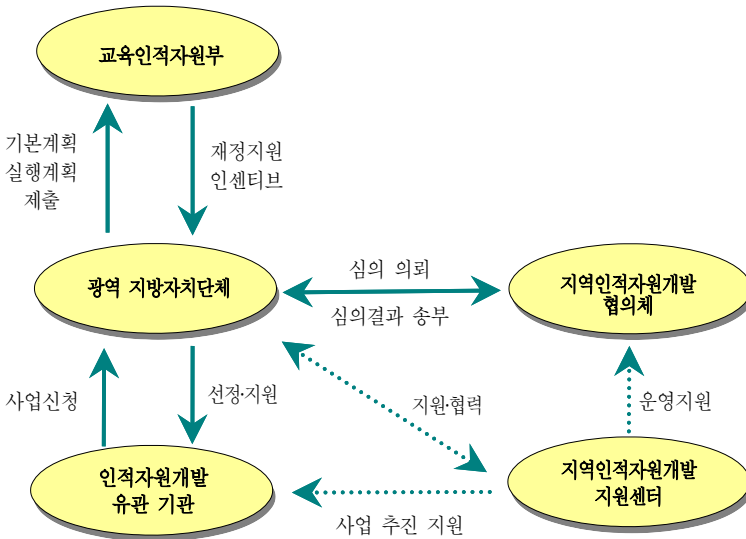
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시·도에 제시한 “지역혁신체계(RIS) 구축방안”(03. 8)에 근거하여 제시한 모델로 관련 소위원회/실무조정회의는 지역실정을 고려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1.14).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축 확대방안(안), p.10.

○ 나아가 13개 시·도(수도권 제외)를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연구기관 및 교육청 등이 연계한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기구 즉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지역단위 인적자원 개발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 결과 13개 시도에 RHRD 협의체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운영

- 2005년 6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총괄국의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 계획(안)’ 보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역인적자원개발의 구심점으로 설정하고, 사업기획, 평가 등에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현실화하며, 지자체, 교육청, 노동청 등 유관기관간 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그림 II-3]과 같은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체계를 제시하였음.

[그림 II-3]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체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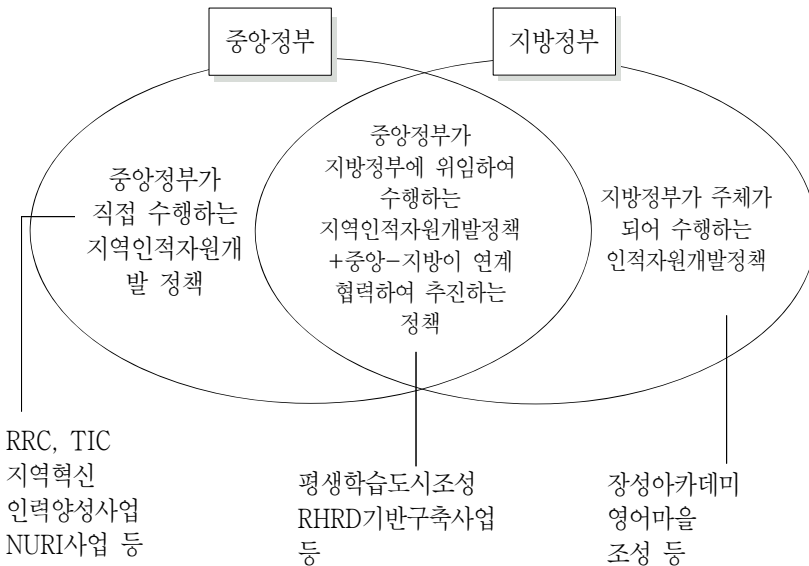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총괄국(2005. 6),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 계획(안), p.9.

다. 내실화 및 활성화 단계: 우수사업 발굴·확산단계(2006~2007)

- 이 단계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지속적인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기위해 지역 내 고용창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우수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 모형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산하는데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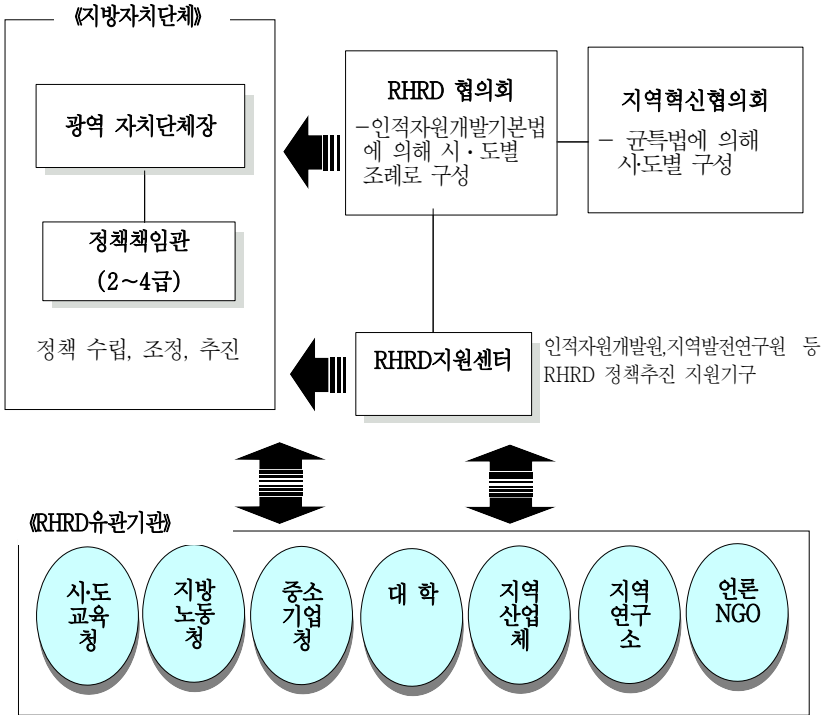
- 2006년부터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추진예산을 100억원으로 증액하고, 사업 추진계획 및 의지, 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역별 사업비를 차등 지원 하였으며, 재정자립도에 따라 5~20%의 대응투자를 요구하였음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조정과: 2006. 2. 23, pp,1-3 참조).
- 2007년 3월에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의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007년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계획(안)’ 보고에서는 2005년 6월에 제시된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 계획(안)’에서 제시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영역([그림 II-4] 참조)에 기초하여 시·도별 RHRD 추진체제를 구축하였음([그림 II-5] 참조).

[그림 II-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영역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총괄국(2005. 6),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 계획(안), p.3.

[그림 II-5] 시·도별 RHRD 추진체제 구축 현황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3),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007년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계획(안), p.4의 그림을 수정·보완.

○ 특히 2007년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RHRD협력사업(R-pack)과 NHRD-RHRD연계사업을 추진하였음.

- 부산 남구, 충남, 울진군에서 R-pack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음.
-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사업 중 지역과 연계가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

R-Pack 사업 (RHRD 패키지 프로그램)

-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지역 협력망을 구축하여 인력의 양성, 연계, 활용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프로그램 개발·운영
- ※ R-Pack(예시): 기획(지자체) + 인력양성(교육청, 대학, 직업훈련기관) + 연계(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 활용(기업)

NHRD-RHRD 연계대상 시범사업 예시

- 지역대학의 역량 및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커리어코칭(Career Coachig)시스템 구축
- 영어학습캠프 운영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3),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007년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계획(안), pp.14-16 참조.

라. 재설계를 통한 도약기(2008~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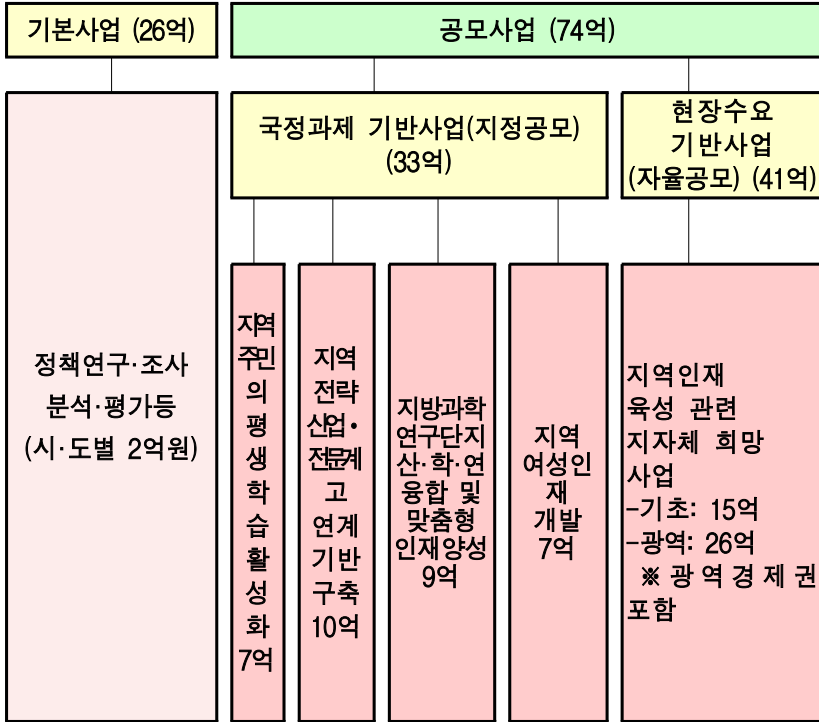
- 이 단계에서는 새정부 새 정부 국정철학인 ‘자율’과 ‘경쟁’ 중심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사업을 재설계

※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명칭 변경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창의적 지역 인재육성 사업 발굴·확산

- 시·도별 균등배분(1/N)을 축소하고 자율·경쟁 공모 확대
 - ※ 공모사업 비율 '07년 30억원 ⇒ '08년 74억으로 확대
- 새 정부 국정과제 중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차원에서 인재육성 성공사례를 창출하도록 지원
 - ※ 13개 시·도에서 신청한 58개 사업중 선정평가를 거쳐 33개 사업 지원

[그림 II-6] 2008년 지역인재육성사업 구성



○ 2008년도 사업성과평가결과, 우수 사례로 선정된 8개 사업은 계속 지원

<표 II-2> 2008년도 지역인재육성 우수 사업

| 분과 | 지역 | 사업단명 |
|----|------|---------------------------------|
| 여성 | 충청북도 | 충북 여성인재개발 사업 |
| 과학 | 전라북도 | 전북과학연구단지 산·학·연 융합 및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
| 자율 | 전라남도 | 한옥건축 인재육성사업 |
| - | 부산 | 부산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 사업 |
| 기초 | 제주도 | 3名 뷰티테라피 관광네트워킹 인재육성 사업 |
| 자율 | 전라북도 | 전북-시·군 연계(식품산업) 인재육성 F-HRD 프로젝트 |
| - | 울산 | 부·울·경 주력산업 맞춤형 학습·고용 연계 사업 |
| 광역 | 경상남도 | 항공우주산업 인재육성 클러스터 |

<표 II-3> 2008년도 지역인재육성 우수 사업의 강점

| 분과 | 지역 | 사업단명 | 우수 항목 (강점) |
|---------|-----|---------------------------------|---|
| 과학 | 전북 | 전북과학연구단지 산·학·연 융합 및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급에서 기능 인력까지 계층별 맞춤형 인력지원 사업 실시 - 지자체, 지역기업, 과학단지 등의 공동 사업 추진 · 전국단위 지방과학연구단지와 공유하면 시너지효과 기대 · 과학단지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 직원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
| 여성 | 충북 | 충북 여성인재개발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교육훈련기관, 취업처 등과의 공고한 협력망 구축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학습과 취업의 기회 제공 · 공중과를 통한 타지역 전파 · 심화교육사업비, 사회적 기업 육성 기반 확보 |
| 자율 - 기초 | 전남 | 한옥건축 인재육성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화산업으로 연계 가능성이 높아 지역 호응도가 높음 · 장기적 사업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육성된 인력의 전국적 활용(취업) ·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 |
| | 부산 | 부산남구 교육인적자원 개발벨트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지원과 사업 운영체계가 타 지역의 모델이 될 수 있음. · 학습과 복지의 연계가 잘 이루어진 모델 -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사업의 외연 확대 · 대학생 멘토링 사업등을 통해 지역 저소득층 학습역량강화에 기여 |
| | 제주도 | 3명 뷰티테라피 관광네트워킹 인재육성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와 사업단의 공고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장기적 사업 추진 역량 확보 ·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자율 - 광역 | 전북 | 전북-시·군 연계(식품산업) 인재육성 F-HRD 프로젝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성과 부합하는 식품산업을 정확히 포착하여 관련 인력의 육성과 활용을 위해 지자체와 사업단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의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가져옴. · 향후 타 지역의 모델링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성실한 사업수행과 빈틈없는 사업관리 능력 탁월 · 식품산업 관련 지역 경제 리더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식품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 고양 |
| | 울산 | 부·울·경 주력산업 맞춤형 학습-고용 연계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조정과 연계를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취지를 잘 살린 사업 · 맞춤형 학습, 고용 연계사업들을 세 개 광역시의 인력수급 조건을 고려하여 잘 추진함. |
| | 경남 | 항공우주산업 인재육성 클러스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력산업의 인재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 · 사업수행의 체계적 수행이 돋보임. |

○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통계 분석한 결과, 우수 사업단이 강세를 보이는 평가항목은 각 분과별로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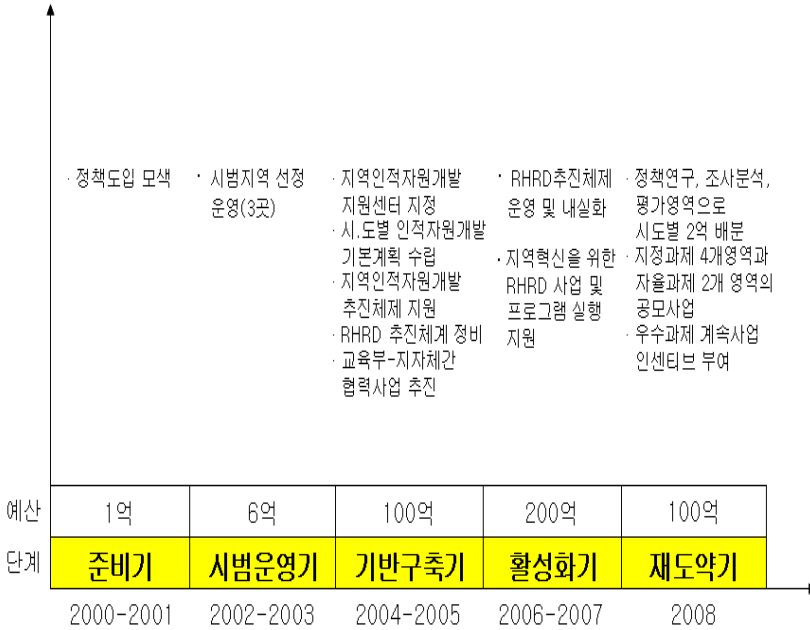
- 사업단의 전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항목
- 평가점수의 격차가 큰 항목

<표 II-4> 2008년도 지역인재육성평가 우수 항목

| 분과 | 평가 우수 항목 |
|---------------|--|
| 과학 분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사업 참여 및 지원 정도 · 사업초기와 비교하여 지자체가 보유하고 된 사업 관리, 조정역량 · 사업초기와 비교하여 사업단이 보유하고 된 프로그램 운영 역량 · 자체 모니터링 결과 반영 |
| 여성 분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과의 연계정도 · 사업초기와 비교하여 사업단이 보유하고 된 프로그램 운영 역량 · 프로그램 우수성 · 지자체 참여 및 지원 |
| 자율 - 기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과의 연계 · 지역수요 반영 프로그램 우수성 · 사업초기와 비교하여 지자체가 보유하고 된 사업 관리, 조정역량 · 사업초기와 비교하여 사업단이 보유하고 된 프로그램 운영 역량 |
| 자율 - 광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과의 연계 · 지역수요 반영 프로그램 우수성 · 사업초기와 비교하여 지자체가 보유하고 된 사업 관리, 조정역량 · 사업초기와 비교하여 사업단이 보유하고 된 프로그램 운영 역량 |

○ 지금까지 살펴본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추진 사업과 추진예산을 요약하면 [그림 II-7]과 같음.

[그림 Ⅱ-7] 시기별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주요 추진사업



자료: 전국RHRD센터협의회·교육과학기술부(2008. 4.25), 전국RHRD센터 성과보고회.
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2.17), 2009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설명회.

제2절 주요성과

-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지난 6년간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역차원의 인식 확산 및 지자체장의 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 제고: 예산 확대와 조직의 신설

※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 지원액(100억원)에 대한 지자체 대응투자액

- '06년 23억원 → '07년 31억 → '08년 33억원(계획서 기준)
 - ※ 지역인적자원개발 총괄부서 신설
- 전북 인재양성과('06), 제주 인적자원과('06), 경북 인재양성과('08)

○ RHRD지원센터,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등 인프라 구축

- ※ 전국 12개 RHRD지원센터 지정·운영('04~)(수도권 제외, 대구·경북은 통합 운영)
- ※ 시·도지사 주관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운영: 강원, 경남 (다른 시도는 지역혁신협의회 산하 분과위 형태로 운영)
-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07)
- 인적자원개발책임관 지정·운영('04~)
- 지역인적자원개발 DB 구축·운영('04~)

○ 시·도별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경험 축적

-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06-'10) 수립('05)
- '06부터 시·도별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 총112개 프로그램('06), 총223개 프로그램('07), 총33개 공모사업('08)

○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추진을 통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광역자치단체와의 정책 파트너십 구축

○ 지역에서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인식의 점진적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준비, 보육 및 인프라 구축 단계를 거쳐서 지자체로 하여금 지

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마련됨.

- 지자체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는 지자체 내부에서 '인재양성' 혹은 '인적자원개발' 관련 조직기구의 신설 및 확대 개편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표 II-5> 참조).

<표 II-5> 지자체별 지역인적자원 추진체계 현황(2008. 12월 현재)

| 지역 | 시·도 전담조직 | 지역 | 시·도 전담조직 |
|----|-------------------------|----|---------------|
| 강원 | 기획관실 교육협력팀 | 부산 | 경제산업실 교육과학기술과 |
| 경남 | 정책기획관실 | 울산 | 기획관리실 기획관실 |
| 광주 |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 전북 | 기획관리실 인재양성과 |
| 전남 | 행정과 | 제주 | 자치행정국 인적자원과 |
| 대구 |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경제기획담당) | 충남 | 교육협력법무담당 |
| | | | 평생교육 T/F |
| 경북 | 행정지원국 인재양성팀 | 충북 | 정책기획관실 |
| 대전 | 국제교육 담당관실 | | |

-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을 위한 인프라 체제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인적자원개발 DB 구축·운영을 통해 인프라 기반구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짐.

-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 계획 수립 및 이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축적됨.

-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상응하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의 경험

을 보유함.

○ 교육인적자원부와 광역자치단체와의 조직적 연계 확보가 가시적으로 나타남.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등의 지역인적자원개발 법적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인적자원개발을 매개로 교육과 자치행정간의 연계성을 확보함.

○ 지역인적개발사업의 영역이 확대되었음.

- 시·도별로 지역 전략산업 및 주민 수요에 부응한 인적자원개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 사각지대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발굴하며, R-pack사업을 도입하여 지역 시·도민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총체적 사업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현영섭 2008b)

- ‘지역인재육성 기능 -> 지역필요인재수급 -> 지역산업활성화 -> 지역발전’으로 연결되는 긍정적 강화 루프가 존재

- 기본적으로 그 동안의 지역 인재육성 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 지원을 지방에서 받아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인재를 육성하고 제공함으로써 지역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발전까지 연계되는 것으로 분석

- 또한 부가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역인재육성 지원이 지방의 대응 자금을 유도하고 지역 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발생시킴으로써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도 발생

-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과도한 기대 및 사업부담 가중으로 지역인재육성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도 공존

제3절 문제점

1. 문제점

가. RHRD 정책영역의 혼재로 인한 정체성 미흡

- 직업훈련, 평생학습, 여성인적자원개발 등 관련사업이 여러 부처의 법령(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및 재원으로 지역에서 혼재되어 추진되고 있음.
 - 더구나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역에 평생교육협의회가 신설되어 사업 영역의 중첩가능성이 가중되고 있음.
- 지역인적개발사업의 영역 확대
 - 시·도별로 지역 전략산업 및 주민 수요에 부응한 인적자원개발 시범 사업을 추진, 정책 사각지대의 인적자원개발 사업 발굴, R-pack사업을 도입하여 지역 시·도민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총체적 사업으로 영역 확대
- 지역 차원의 RHRD 정책관리 시스템 부재와 거버넌스 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함.

-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나, 정책 리더십 확보와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연계 미흡, 지역 내 각종 사업 및 주체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체제 구축 부족함.

○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성과의 계량화 부진

- 지역인적자원개발 평가를 위한 정량화된 지표 개발 미흡
-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정책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미흡

나.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불안정성

-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담당 조직 및 담당자의 잦은 개편과 교체, 정책 추진의 일관성 결여와 그로 인한 지역에서의 혼란 및 정책의 안정성, 일관성, 신뢰성이 떨어지고,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노력의 미흡 및 지역 틈새시장 전략 위주 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낮은 인식도와 전문역량

-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역 인식의 점진적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그 결과로 지자체 내에 인적자원개발 관련 조직 기구 신설 및 확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시·도에서는 RHRD를 지자체 사무로 인식하지 못해 전담부서 및 인력 배치가 미흡한 실정
- 대부분 정책기획관실, 혁신분권담당관실 등에서 1~2명이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음.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전문성 부족도 RHRD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함.

라.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추진 체제의 기능 정립의 필요성 제기

○ 지역 단위 추진체계 기능 미약

-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법적 근거 취약 및 실행 단위 확보 미흡으로 의결 권한 실행력 미약
 - ※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위원장 현황: 시·도지사가 위원장인 지역은 2곳,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이 위원장인 지역은 4곳, 해당 지역 대학 교수가 위원장인 지역은 6곳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 부재로 센터 전문 인력 부족, 센터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리더십 확보 곤란
 - ※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인력 현황('08.4월): 센터 평균 총인원 4.4명(센터장 및 보조인력 포함), 전문 연구직의 경우 2~3명 정도로 대부분 계약직

○ RHRD 거버넌스 위상 및 성격 규정의 문제

- 지방고용심의회가 일부 지자체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나, 주로 노동시장적 측면인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협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인적자원 양성, 배분 활용의 전 단위에 관련되는 기관의 포괄적 참여가 요구됨.
-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직선제도 감안하여 교육청 및 교육 행정 기관과의 연계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유사 인재육성 관련 기구 중복 문제 해결

-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지역평생교육협의회, 지방고용심의회 등 관련 개별 법령에 기초하여 기능이 중복되는 기구들이 지역에 다수 설

립되어 있음. 세 기구 모두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구 기능이 상당 정도 중복되고 있음.

○ 중앙 단위의 지역인재육성 지원 부처 간 조율 및 연계 부족 극복

- RHRD지원사업,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등의 사업이 중복 실시되는 경향이 있음.

○ 지역인적자원개발에서의 지방 대학의 역할 강화

-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핵심적인 역할수행이 필요한 실정이나, 인식 및 지역사회의 협력네트워크 부족으로 아직까지 지역대학의 RHRD사업에 기여도가 저조함.

마. 지역인재육성 지원 사업 추진 방식의 전환 문제

○ 균등 배분과 공모 방식간의 갈등

- RHRD 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 정책 작동기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각 지역에 대한 주된 재정지원 방식으로 n분의 1 방식이 주로 채택되었음.
- 이후 전국 13개 시도로 확대되어 시행될 때에도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공모방식을 채택해 왔지만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 센터 설치 운영 등과 같이 초기에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n분의 1 방식이 주된 방식으로 활용되었음.
- 예산이 13개 시도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배됨으로써 각 지역의 인재육성 추진 주체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할 유인을 유발하기 어려웠음.

- 이처럼 지금까지의 예산배분방식이 지역의 추진의지와 역량을 충분히 반영한 지원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인재육성 선도 지역 창출이 어려워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을 겪고 있음.
- 2008년 사업의 경우,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지역의 균등 배분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탈락한 지역의 경우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과 '그나마 축적된' 역량마저 사장될 위기

○ 경쟁과 형평간의 조화로운 운영이 필요

- 궁극적으로 지역 스스로의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인재육성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역량이 미흡한 시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바. 광역 경제권 발전 전략과 인력 개발의 연계 문제 해결

○ 광역권 지자체간 협력체제 구축의 미비

- RHRD센터협의회를 통한 기본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으나 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광역권경제에 부합하는 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과 관련된 공동연구개발 및 DB구축은 매우 미미한 실정

○ 창조적 광역 경제권 발전 전략의 광역경제권 인력 개발의 요구 수렴

- 새롭게 발표된 지역발전정책('08. 7. 21)에서 제시될 수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요구에 대한 청사진 마련
- 광역경제권의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책임질 추진체제에 대한 고민 필요
- 광역경제권에 적합한 정책 과제 발굴 고려
- 권역 내 및 권역 간 인력 및 기술개발, 생산기반 구축 등 기능별 역

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식클러스터 구성 방안 모색

2. 해결 과제

가. 지역인재육성의 정체성 및 목적과 관련하여

○ 교과부 사업으로의 정체성

- 교과부 사업으로서 지역인재육성사업이 특성화될 수 있도록 내용과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가급적 양성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 focusing 하는 것이 좋을 듯함. 특히 성과 지표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고용 및 활용보다는 양성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부처 간 중복 문제를 줄이는 가장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직접 고용을 위한 인력 양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학습 기회 제공의 측면에서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함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성 및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지역인재육성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 * 지역에서의 양성과 고용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때, 고용 이외의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 학습문화 조성 등의 기초역량강화를 위한 RHRD의 접근이 필요함. 그리고 이는 지방대학의 역할과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접근될 수 있음.
- 해당 사업의 특징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제목의 변경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현재의 지역인재육성사업이라는 명칭은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국가지원사업으로의 정체성

- 지역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역의 인식이 아직 낮은 상황에서 지역에 해당 사업을 일임하는 것은 일종의 책임에 대한 방기라고 볼 수 있음.
-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seed money 제공의 과정이라 여기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비효율의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함.
- 국가지원과 지역자립의 관계를 적절히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국가지원을 줄이고 자발적으로 지역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중장기 계획에 녹여내는 것이 필요함.

○ 국가전략사업의 하부 사업으로의 정체성

- 광역경제권의 인재육성사업으로 부각시키는 방안 고려
 - * 이 경우 광역 거버넌스의 실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인재육성사업의 추진체계를 설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 광역경제권을 독자적으로 부각하지 않을 경우, 하나의 추진 과제 및 시범 사업 등으로 포함시키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나. 추진 체계 구성과 관련하여

○ 보다 강력한 RHRD 추진 실행력 확보를 위한 독립단위 구성

- 영향력을 이끌어 내기에 부족한 협의회를 RHRD의 중심 단위로 두기 보다는, 보다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통제단위가 있어서 기획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이는 시범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유용할 수 있음(표준모델로부터 수정모델로의 점진적 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공).
 - * 물론 이는 지역자립도가 완성되기 전 단계에 보다 더 적합한 모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 기초와 광역 간의 관계 설정의 중요성

- 기초의 수요가 광역으로 연계될 수 있는 통로 마련(광역이 기초의 수요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광역 자체의 선심성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광역 단위의 역할

- 기획과 조정 능력의 강화가 요구됨. 이를 위해 기초뿐만 아니라 광역 단위의 지역인재육성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예. 연수)이 필요함.

○ RHRD 센터

- RHRD센터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는 그간 문제가 많이 제기된 만큼, 중앙에서 발전적 모델을 구상하고, 이 모델에 적합하도록 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각 센터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임.

○ 기업 및 민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구도 마련

- 기업의 사회적 환원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인재육성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함.

○ 추진 체계 및 조직 구성에의 유연성(기능과 역할 중심의 조직 구성)

- 기존 (관료) 조직에 기초하여 정책이나 사업을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정책과 사업에 대한 구상을 기초로 추진 체계를 조성하는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함(특히 광역경제권의 경우 이와 같은 접근이 더 필요하다고 봄).

* 이 경우 재원 동원 방안 역시 개별 독립 사업 단위를 중심으로 여러 재원이 모아지는 방식 등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임(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적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분명한 사업적 효과가 있어서 유인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다. 사업방식과 관련하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매칭 등에 있어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조례 제정은 가장 일차적인 선결 과제라고 볼 수 있음.

○ 보다 엄격한 수요 조사 실시

- 개별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 지역민의 역량 강화, 지역민 학습 요구 만족 등과 관련하여 보다 엄격하고,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예의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제 마련 필요

- 중앙에서 확인하는 정보와 지역의 실제 정보 사이에 불일치되는 경우가 벌어질 경우 사업 수행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기제 마련이 필요함(예. 사업 선정 전의 현장 실사 / 컨설팅과 연계된 과정 평가 수행(정성적 지표 수집의 효과 제공) 등).

○ 지정사업과 자율공모사업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

- 각각의 고유 목적을 살린다 하더라도, 전체 방향성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설정되어야 함. 국가의 전략 정책이면 혹은 지역에서 원하는 것이면 어떤 것도 좋다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본 사업의 정체성을 잃게 될 위험성이 있음.

○ 사업 성과 공시

- 지자체장의 의지 및 역할을 강제할 수 있도록 성과공시제도 등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는 특히 성과지표 산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지자체장의 참여 독려 등의 여러 연계 효과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제 3 장 새로운 지역 정책과 인재육성

제1절 지역인재육성정책을 둘러싼 환경진단

1. 사회·경제적 환경

□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의 흐름 강화

○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국가만이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가능

-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책임을 지역 수준에서 인지하고,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세계은행(World Bank), OECD, UNESCO 등의 국제기구는 인적 자원개발 중심의 지역발전전략을 강력히 권고, 유럽각국은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독일(Jena시), 영국(남동부 Kent Thames-side 연합 지구), 핀란드(Oulu 지역)

□ 창조적 인재 양성의 중요성 강조

- 창의적 인적자원이 개인과 조직, 지역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
- 지역의 자생력 증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중심의 발전 정책이 반드시 필요
-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해당 분야의 인력 수요 급증
 - 창조적 인재 양성 및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인재의 수요처인 지역이 적극적 관심 표명

□ 교육과 노동시장의 결합 강화 추세

- 급격한 기술 변화로 단기간 고용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주민의 직업역량 확충 필요
 - 지역주민의 직업 역량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교육과 노동시장의 결합
 - ※ 미국 WIRED INITIATIVE (Workforce Innovation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노동력 혁신 프로그램)
 - 미국의 세계 경쟁력 우위를 지속시키기 위해 각 지역 차원에서 실시한 교육과 고용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고용훈련부(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노동력 혁신을 교육과 통합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지원

□ 분권화와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 증대

- 지역 차원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요구를 지자체, 민간, 시민단체 등의 이해당사자(stakeholder)들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파악 및 해결
 - 이들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 인적자원개발 추진
 - ※ OECD는 지역발전의 결정요인으로 거버넌스(Governance)의 중요성 강조
 -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구상 요소로 경제성장(economic growth),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 효과적 거버넌스(effective governance)를 강조
 - 특히 효과적 거버넌스의 경우,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정부 및 민간, 시민사회와의 보다 적극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함을 제기

2. 법·제도적 환경

□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평생교육법의 충돌

-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의회의 근거 마련, 협의회 심의사항 등 규정
- 지역단위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등 지역주민 평생교육 추진체제 정비
- 지역의 관점에서 볼 때 중복으로 인한 행정낭비 초래
- 근거 법의 정의로 볼 때, 인적자원개발의 영역이 양성, 배분 활용 전반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라면, 평생교육의 영역

은 그 가운데 이에 관련된 조직적 교육 활동에 관련된 영역이라 할 수 있음. 인적자원개발이 다소 포괄적으로 평생교육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면, 평생교육은 비교적 명시적으로 해당 영역을 법상에서 제시하고 있음. 그리고 이의 정의가 지역 차원에서도 같음하여 규정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은 인적자원개발의 법상의 개념이 실행력을 띠기 위해서는 추진체제 역시 이러한 상위 개념에 부합하는(그리고 그의 권한을 가진) 형태로 구축되어야 하며, 그것의 하위 단위 혹은 협조 단위로서 평생교육의 추진체제와 연계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현재 법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체제의 역할은 이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함.
- 추진체제의 경우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심의기구로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것을 임의규정하고 있음. 이에 반해 평생교육법에서는 심의기구로서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는 당연규정으로, 실행기구로서 시동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구평생학습관은 각각 임의규정과 당연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점에서 평생교육의 추진 기제가 법상으로는 더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결국, 근거 법상으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및 영역과 추진체제 간에 유기적 연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인적자원개발의 영역이 양성, 배분 활용 전반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포함하고 통합적 영역인 반면, 평생교육의 영역은 그 가운데 이에 관련된 조직적 교육 활동에 관련된 영역으로 한정
 -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의 사업 영역이 겹

치고, 각 법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와 지역평생교육협의회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 등에 어려움 발생

- 지역 평생교육의 주요 실행 기구로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와의 소관 업무와 다소 중복 될 우려 발생

<표 III-1>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평생교육법 비교

| 구분 | 정의 |
|-----------------------|--|
| 인적 자원 개발 기본법 | <p>제2조(정의)</p> <p>1. "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p> <p>2. "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p> <p>3. "인적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p> |
| 평생 교육법 | <p>제2조 (정의)</p> <p>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p> |
| 구분 | 추진체제 |
| 인적 자원 개발 기본법 | <p>제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주민 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p> |

| 구분 | 추진체제 |
|-----------|--|
| 평생 교육법 | <p>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p> <p>① <u>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시·도협의회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p> <p>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p> <p>⑤ 시·도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p> <p>① <u>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시·군·구협의회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p> <p>④ 시·군·구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p> <p>① <u>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u></p> <p>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p> <p>① <u>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u></p> <p>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 구분 | 기타관련조항 |
|-----------------------|---|
| 인적 자원 개발 기본법 | <p>제4조(국가 등의 책무)</p> <p>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 분야 및 계층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적극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p> <p>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수급 전망 등 인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적극 알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발에 이용하게 한다.</p> |
| 평생 교육법 | <p>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p> <p>제11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5조 (평생학습도시)</p> <p>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p> |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 시·도의 고용 촉진, 직업능력개발, 실업 대책 등 고용 문제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고용심의회 설치

- 지역 차원에서는 교과부 사업과 노동부 사업의 일부가 겹쳐서, 중복 실시되는 현상 발생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2조(지방고용심의회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고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업무 관할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지방노동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가.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나.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13조(지방고용심의회 기능) 지방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도의 고용촉진·직업능력 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정책적 환경

정부의 '인재대국' 강조 정책

○ 새 정부는 5대 국정지표에 인재대국을 포함시키고,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인재양성을 정책 방향으로 함.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발전 도모

○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권역별로 관계 시·도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광역경제권 발전 위원회' 설치('09년 예정)

- 지역발전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로서 광역 거점대학 육성, 산학연 연계활성화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촉진, 광역경제권 R&D 거점과 지역전략산업의 연계 촉진 등을 제시

- 수도권 규제 완화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정책 필요

- 침체된 경기 회복,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08. 10)
 -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이전 규제 완화, 공장·산업단지 입지 규제 개선,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등

- 중앙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상대적 역차별에 대한 지원을 강구함과 동시에, 지역이 자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전략 추구 필요
 -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유치·활용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발상 필요

<표 III-2> 지역인재육성 정책의 SWTO 분석

| 강점: Strength | 기회: Opportunity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사회에 부합하는 정책 ■ 그동안 RHRD 시범사업 운영 경험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기반 마련 ■ 광역경제권 인력사업 추진경험 축적 (지역자립도역량 강화 계기) ■ 정책추진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 시·도 인재개발책임관 지정·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부의 ‘인재대국’강조 정책 ■ 지역발전정책에서 인력양성 강조 ■ 지자체장의 인재양성에 대한 관심 제고: 대응투자액23억(06년)→31억(07년)→33억(08년) ■ 주민직선 교육감 선출제도 도입 ■ 시·도지사의 평생교육 관련 책임·권한 확대 |
| 약점: Weakness | 위협: Threat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HRD 정책영역에 대한 논란지속 ■ RHRD 센터의 기능과 전문성 미약 • 인적자원개발기본법폐지(예정)로 RHRD 추진체제(RHRD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삭제 우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규모의 확대 불투명 ■ 관련부처간 지역 인재양성 정책협력 미흡, 유사·중복사업 조정기제 미약 ■ 정책성과의 계량화 곤란 |

제2절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³⁾

1. 정책의 기초

-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기초에서 출발
- 세계 각국이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추진
 - 일 본: 47개 도도부현 → 8개 광역지방계획권
 - 프랑스: 96개 데파르망 → 22개 레지옹 → 6대 광역권
 - 독 일: 16개주 → 9개주
 - 영 국: 42개 카운티→ 9개 광역경제권
- 이러한 시대변화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책 기획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발간 보도 자료와 발표 자료 등을 재정리.

- 글로벌 시각에서의 지역경쟁력 제고보다는 ‘지역간 키 맞추기’(균형)에 주력
 - ※ 과거 균형발전정책이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 촉진에 기여한 바가 있지만 산술적 결과적 균형에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
- 100년 전의 행정구역에 고착되어 소지역 이기주의에 집착
- 행·재정적 권한의 과도한 중앙 집중으로 지역의 자율성 약화
 - ※ 중앙주도의 나눠주기식 분산투자로 막대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고 지역의 특화발전을 저해

2. 정책의 기본 방향: 광역화, 특성화, 자율화, 동반발전

-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권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
 - 내국적 균형에서 탈피, 세계화에 대응하는 경쟁력있는 지역 창조
-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추구
 -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 경쟁을 유도
- 지방분권·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
 - 실질적 지방분권,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동시 제고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
-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구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및 각 지역간 발전적 분업구조 형성과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간 동반·상생 발전을 도모

[그림 III-1]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과 전략

| | | | | | | | | | | | |
|--|---|---|-----------------------------------|------------------|---|-----------------------|--|-------------|---|-------------|-------------------------|
| 비 전 |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 | | | | | | | | | | |
| 기 본 방 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구축 ■ 지역개성을 살린 특성화된 지역발전 ■ 지방분권·자율을 통한 지역주도 발전 ■ 지역간 협력·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 | | | | | | | | | |
| 추 진 전 략 및 과 제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전국도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td> <td style="width: 50%;"> ○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단위 차별화된 발전 </td> </tr> <tr> <td> 신성장동력발굴 및 지역특화발전 </td> <td> ○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신성장동력 구축 </td> </tr> <tr> <td>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강화 </td> <td>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지방 계획·개발권 강화 등 </td> </tr> <tr> <td> 수도권·지방 상생발전 </td> <td> ○ 지방 기업유치 및 투자여건 획기적 제고,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수도권규제 합리화 </td> </tr> <tr> <td> 기존 시책 발전·보완 </td> <td> ○ 혁신·행정중심도시·기업도시 발전적 보완 </td> </tr> </table> | 전국도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 ○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단위 차별화된 발전 | 신성장동력발굴 및 지역특화발전 | ○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신성장동력 구축 |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강화 |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지방 계획·개발권 강화 등 | 수도권·지방 상생발전 | ○ 지방 기업유치 및 투자여건 획기적 제고,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수도권규제 합리화 | 기존 시책 발전·보완 | ○ 혁신·행정중심도시·기업도시 발전적 보완 |
| | 전국도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 ○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단위 차별화된 발전 | | | | | | | | | |
| | 신성장동력발굴 및 지역특화발전 | ○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신성장동력 구축 | | | | | | | | | |
| |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강화 |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지방 계획·개발권 강화 등 | | | | | | | | | |
| | 수도권·지방 상생발전 | ○ 지방 기업유치 및 투자여건 획기적 제고,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수도권규제 합리화 | | | | | | | | | |
| 기존 시책 발전·보완 | ○ 혁신·행정중심도시·기업도시 발전적 보완 | | | | | | | | | | |

자료: 최상철(2008.11).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비전과 전략.

3. 지역발전정책 추진 내용

가. 현정부 출범 이후 지역발전 정책 이력

| 정책 | 주요 추진 내용 |
|----------------------------|--|
| 새정부의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경제권: 16개 시·도 → 5(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 2(강원권, 제주권)로 묶어 광역경제권 육성 - 광역경제권과 병행하여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등 3차원적 국토개발전략 제시 |
| 행정·혁신·기업도시 등을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혁신·기업도시 자족기능 확충 등 발전적 보완방안 마련 - 새만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 |
| 30개 선도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선정, 투자 | - 향후 5년간('09~'13년) 광역기반시설 확충, 성장거점 육성 등에 50조원 투자 |
|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지역선도산업 육성 | - 향후 5년간('08~'12년) R&D, 인력 양성, 정보화, 첨단 연구소·기업·인력 유치 지원 등에 5.5조원 투자 |
| 광역권 인력양성 거점대학 육성 | - 선도산업별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09년부터 3개년 시범사업으로 매년 총 1,000억원씩 투입 (5년간 5천억원)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개편 | - 균형발전특별회계('08년 7.6조원)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10년 9조원 내외), 포괄보조금화 |
| 지방의 핵심적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핵심사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 추진 (예시: 부산 신항 배후 물류·산업단지 조성 지원) - 동서남해안개발 관련 복잡한 계획 수립 절차와 각종 위원회 중복 심의 간소화, 자연공원제도 합리적 개선 - 경주 등 고도보존법상 역사문화환경지구내 행위제한 내용 및 기준 명확화, 문화재조사 민원처리 기간 대폭 단축 (140 → 40일) |
| 산업단지 공급 확대 및 노후 산단·항만 재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서천), '09년 착공 - 지방 노후산업단지의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 부산 북항, 인천항, 군산항 등 10대 노후 항만 재개발 - 김제, 울산,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 부산항, 광양항, 마산 등은 확대 |

<표 계속>

| 정책 | 주요 추진 내용 |
|-----------------------------------|--|
|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11.3일 발표)에 지방경제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확대 투자 4.6조원의 90% 수준을 지방에 투입 및 지방기업 지원(4,400억원) - 중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9조원 지원 - 임시투자세액공제율(7%)을 수도권과 지방간 차등화하여 지방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 지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포함) 10% - 재정에서 출자하는 모태펀드가 지방중소기업 전용 투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최대비율 확대 (30%→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전용펀드 조성(목표): ('08) 1,611 → ('09) 2,000 → ('12) 5,000억원 -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기술사업화 자금 융자제도 도입 ('09년, 4,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
|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개발이익의 지방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여, 지방발전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 - 내년 상반기중 방안을 마련, '10년 예산부터 지원 |
| 지방 및 지방기업 세제 혜택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도입 - 지방창업 '건설업, 음식점업'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창업 후 4년간 법인세·사업소득세 50%를 감면 -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 차등 적용 |

나. 법제의 정비

○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의 전면 개정을 입법 예고

○ 균특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명칭의 변경

- 법률 명칭("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역발전특별법")

- 총괄·조정기구 명칭(“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역발전위원회”) 변경
- ‘광역화·특화·자율·협력’이라는 新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지역발전”으로 “국가균형”을 대체

2) 광역경제권의 법적 제도화 추진

- ① (계획) 현행 시·도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광역발전 계획 중심 「지역발전5개년계획」 체계로 개편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함으로써 광역경제권의 체계적 추진 도모
 - 광역발전계획에 국가지원 시·도사업도 포괄함으로써 광역경제권의 큰 틀에서 시·도사업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체계를 구축
 - 시·군 또는 복수 시·군간 기초생활권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토록 하고, 지역발전5개년계획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생활권단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추진 여건 조성
- ② (추진기구) 광역경제권별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시·도간 연계·조정 등을 위한 추진기구 마련
 -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 각계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와 상시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시·도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효과적인 시·도간 협력·연계 추진기반 구축
- ③ (재정지원) 기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여 광역발전계정을 중심으로 시·도를 포괄하는 광역경제권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

3) 지역발전 주요 시책의 정비

○ 新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반영하여 주요 시책을 수정하고, 현행 나열식 시책 규정을 주요 부문별로 체계화

| 현 행 | 개 정 안 |
|-------------------------|-------------------------|
| 1.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 1. 국토의 다원적개발/지역발전역량 확충 |
| 2. 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 | 2.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
| 3.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 | |
| 4. 지역경제활성화의 촉진 | |
| 4. 지방대학의 육성 등 | 3. 지역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
| 5.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 |
| 신 설 | 4. 지역 발전거점 육성/교통·물류망 확충 |
| 6. 지역문화·관광의 육성 | 5. 지역문화·관광의 육성 |
| 7.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 6.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 9.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7.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 10.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 8.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전면 개편

①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 지역단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계정’, 광역경제권 및 시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역발전계정’을 설치

- 특별회계의 목적·취지에 맞게 회계간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지역주도 개발전략과 전략적 국가재원 배분간의 조화를 도모

② 사업군 단위 포괄보조금제 도입 통한 지역 자율성 제고

- 현행 지역개발사업(140개 내외)을 20여개 사업군으로 통합, 사업군단위로 각 시·도별 포괄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 자율성 제고

③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 신설

- 기업유치 등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재정 확충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 도입
- 지자체의 노력으로 법인세·부가세(소매, 음식, 숙박)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하여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환원
 - * 인센티브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시·도 지출한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배분

④ 지자체간 연계사업 및 복합시설 활성화 유도

- 둘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연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고 보조율 인상 등 인센티브 제공

5) 기타 개정사항

-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지역사업 평가를 지역발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성과평가 기능 강화

- 광역발전계획 중심으로 계획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 시도계획 심의 등을 위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지역발전협의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전환 등

| 구분 | 현 행 | 개정(안) |
|-------|--|---|
| 법명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 지역발전특별법 |
| 계획 체계 |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 부문별계획 - 지역혁신발전계획 (사·도계획) | ○ 지역발전5개년계획 - 부문별계획 (초광역개발권사업 포함) - 광역발전계획 (사·도계획 포함) |
| 시책 체계 | ○ 지역전략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10개 시책을 선언적으로 규정 | ○ 지역선도사업육성, 교통·물류망 및 발전거점 확충 등을 추가 |
| 추진 기구 | |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평가 | ○ 지경부(부문평가) · 행안부(지역평가) ⇒ 균형위(종합평가) | ○ 지경부와 행안부의 중간평가 폐지하고, 균형위 평가로 일원화 * 평가자문단 구성 · 전문평가기관 지정 |
| 회계명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 광역 · 지역발전 특별회계 |
| 예산계정 | ○ 지역개발사업계정 ○ 지역혁신사업계정 ○ 제주계정 | ○ 지역개발계정 ○ 광역발전계정 ○ 제주계정 |
| 예산절차 | ○ 지자체 → 소관부처 → 재정부 ↳ 행안부 → 균형위(검토의견) | ○ 균형위 검토절차 삭제 * 지자체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균형위는 평가결과로 예산의견 제출 |
| 기타 | < 신설 > | ○ 포괄보조금 제도, 광역사업·시설 복합화 사업 우대 등 |

4. 시사점

-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균형’발전에 집착한 나머지 각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과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집행 과정으로 인해 지역의 중앙정부 의존도를 심화시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광역화와 분권화를 주요 기조로 채택
- 향후 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광역경제권의 거버넌스로 등장할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인재육성의 문제가 의사결정 구조 속에 주요 의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

제 4 장 지역인재육성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제1절 비전과 전략

1. 비전

- 녹색성장을 위한 창조적 지역인재육성
- 창의적 인적자원이 개인과 조직, 지역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
- 지역의 자생력 증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중심의 발전 정책이 반드시 필요
- 지역의 자생적·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방안 마련
-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 지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에서 지역의 자립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 필요

- 지난 7년간 추진된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은 지자체의 “사람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 일자리와 학습의 연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지역발전의 자생력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제 해결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과 관리가 핵심
 - 지역의 특수한 현안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보존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과 문제해결력 제고
 -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인재 육성 사업 발굴
- 새로운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비전과 과제 제시
- 궁극적인 지역발전 정책의 기초인 분권화를 감안 지역인재육성 역시 지역의 자립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임.
 -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역 스스로 지역인재육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탄실하게 해 주는 일이며
 - 중장기 발전 방안의 초점은 여기에 맞추어져야 함.
- 그간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성과를 기초로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 모색
 - ※ 시범운영기(2002~2003), 기반구축기(2004~2005), 사업내실화 및 활성화기(2006~2007), 제도약기(2008~)
-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내실화와 사업의 특성화를 통해 자립적·지

속적인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도모

2. 기본 전략: 지자체의 전략기획 능력 제고

가. 성과관리와 전략계획의 연계 필요성

- 성과관리차원에서 전략계획과 평가를 한 묶음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미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평가와 관련된 부분만을 도입한 관계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략계획과 유리된 상태에서의 개별사업(업무)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중앙정부 주도하에 수립되는 각종의 계획 등이 하향적으로 이루어졌던 관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전략계획 수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
-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외부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외적 요인을 관리하고,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자치단체가 내부적으로 사업추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관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지역인재육성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에 축적된 경험이 부족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수립에 이를 연계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은 매우 중요함.
- 더구나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얽혀있고, 사업추진 체계의 역량이 부족한 자치단체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의사결정권자인 단체장의 관심도 역시 낮은 수준이므로 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정의하여 체계적 전략관리가 중요함.

나. 전략 기획의 의의

- 전략관리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집행하는 과정이므로 전략관리에 있어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인 전략기획(Strategic Planning)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둘러싼 사업환경이 복잡함을 고려할 때 미래의 변화방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인 전략기획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2006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략계획과 평가가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의 1항에서는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고 기술되어 있음.
 - 즉, 계획수립(Plan)과 집행과정(Do)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See)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음.
- Kaufman 과 Jacobs(1988: 38)는 전략기획을 특징을 첫째, 행동, 결과, 집행지향성의 강조, 둘째, 계획과정에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참여의 요구, 셋째, 외부와 관련한 지역사회 이슈의 이해, 넷째, 환경적인 탐색을 통한 기회와 위협, 장단점의 결정, 다섯째, 점검과 수정을 들고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전략기획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전략기획은 기존의 계획과 관련된 관료 위주의 일방적인 계획의 수립에서 더 한층 진일보해서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

- 둘째, 조직의 사명(mission)과 목적의 명확한 방향 설정임. 당면한 현안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회와 이슈를 확인하고 이를 통한 조직의 사명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수반
- 셋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부의 역량과 외부여건의 점검을 강조하고 있음. 즉, 조직 내·외의 환경에 대한 분석(SWOT)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내부 및 외부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자원적 한계 등을 분석
- 넷째, 전략과제의 도출 및 우선순위의 결정. 이를 통해 사명과 목적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됨.
- 다섯째, 전략계획과 연계된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수행으로 평가체계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함.

○ 전략기획의 도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는 기획구조적 특성으로, 전략기획이 일회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순환되도록 그 과정이 공식화되어야 하고, 고객과의 외부 커뮤니케이션 및 조직 내부의 수직적·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하위조직들이 직접 구체적인 예산과정 및 기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권적 기획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함.
- 두 번째는 기획방법상 특성으로, 기획 과정에서 현재 및 미래 관점에서 내·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과 함께 고객 및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세 번째는 성과평가적 특성으로, 성과평가 결과를 전략기획 과정의 개선 및 구성원의 성과제고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평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실제적으로 반영함은 물론 성과평가가 모든 조직 수준에서 인센티브 및 보상과 연계되도

특 해야 함.

- 이를 종합하면 전략기획은 기획구조 측면에서는 공식적이고 분권적이며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를 가져야 하고, 기획과정에서 내·외부 환경 분석과 이해관계자분석에 기초하여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성과평가에 있어 적극적으로 평가정보를 관리하고 반영하는 기획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즉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략 계획 수립 및 이와 연계된 성과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다.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전략기획

□ 전략기획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주민 등 지역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지역리더로서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사항을 전략 기획과정을 통해서 행동계획으로 옮겨야 함.
- 자치단체의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리더십의 실질적인 표현이고 표출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공공기관들이 지역 이해관계자의 공동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동의 협력적인 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메커니즘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전략기획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는 고위정책관리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이며 때로는 새로운 정책관리체제로 조직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함.

- 이 기획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참여가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됨. 이에 주민들이 어떻게 이 기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 하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의견수렴이 배제되던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것은 주민의 의견수렴 시책을 구조적으로 체계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할 것임.
- 모든 전략계획은 세밀한 행동계획(action component)을 설계하여 현재의 결과를 통해서 바라고 있는 다음의 결과물과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함.
- 그리고 효과적인 전략기획은 조직의 전 계층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체계화된 과정을 갖고 활용하게 됨으로써 이점을 살릴 수 있음.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사업을 관리하는 팀으로 광역 시도의 경우 8-12명 정도, 시·군·구의 경우 3-5명 정도 유능한 리더로 구성하여 정보기술, 프로세스 재설계, 보상(유인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정책 담당자와 인적자원 및 의사소통 담당자도 포함해야 함. 그리하여 인적자원과 의사소통(communication)팀을 포함하여 모든 팀원이 여러 기능을 수행하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적 기반을 구축함. 가능하면 이들 구성원은 조직 내의 다양한 수준에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인재육성사업 실천을 위한 전략기획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핵심적 요인임. 이 의사전달은 조직의 수직과 수평적 방향을 통할하는 다면적 대화이자 조직의 내·외부를 거쳐 상의하달 및 하의상달을 유도하는 도구임.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외부 의

사전달 방식은 고객의 수요조사, focus groups, comment cards, one-on-one meetings 등 매우 다양함. 한편, 내부 의사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조직의 목표를 분명하게 전달하면 할수록 조직구성원들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성취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음.

3. 기본 전략: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파트너십 모형은 중앙정부가 국정의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과정에 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상향식 방식과 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책에 자율적으로 호응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울러 파트너십 모형은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한편 자치단체는 거시적 경제정책과 같은 국가 시책을 존중한다는 점과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과부와 자치단체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상호의 입장을 적절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부와 자치단체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천명할 필요가 있음. 교과부와 자치단체는 양자간의 정책적 이슈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임.

[그림 IV-1] 지역인재육성 비전과 전략

| | | | | | |
|-------|--|---|--|---|--|
| 비전 | 창의적 지역인재육성을 통한 글로벌 지역경쟁력 확충 | | | | |
|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RHRD 전략기획 능력 제고 ◆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 ⇒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인재육성 시스템 | | | | |
| 추진 영역 | 추진체계 정비 | 인적·물적 정책인프라 확충 | 사업 특성화 | 사업 성과관리·확산 | |
| 추진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적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 중앙인적 자원개발 지원센터 구성·운영 ○ 지역인적 자원개발 센터 위상 및 기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프로그램 제공 - 지역내 및 지역간 학습인프라 구축 ○ 정보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조사 정례화 - 정보시스템 구축 ○ 지역단위 기금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RHRD 기본계획 ('06-'10) 보완·수정 ○ 특성화 사업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과 관리, 평가 시스템 정비 ○ 인증/우수 사례 홍보 ○ 사업추진 방식효율화·내실화 | |

제2절 정책 과제

1. 추진체계 정비

가. 중앙의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 국가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중앙)

○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가칭)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 개편,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심의 기능

- 중장기적 국가발전 전략과 개별 인적자원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간 상시적인 협의 채널로서의 기능 제고

○ 중앙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지정·운영

- 교과부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위탁기관으로서 인적자원개발정책 분야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지정
- 기획(Master Planning) 및 조사·분석(Research & analysis) 기능
-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촉진자(facilitator) 기능
-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우수사례 확산자(spread agent) 기능
-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의 허브(Hub)로서, 지역센터의 인적자원개발 기획, 조사·분석 등에 대한 컨설팅 기능
- 지역인적자원담당자의 교육 및 훈련(Training Center)
- 광역경제권 지역인적개발사업구상 및 추진
-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거버넌스의 추진(기업체·지방자치단체·대학·시민단체) 및 운영

-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D/B구축 및 운영
-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나. 지역인적자원개발 총괄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 총괄 심의·조정 협의체 구성(지방)

○ 지역별로 산재한 고용·인적자원개발 관련 거버넌스를 통합하여, 지역단 위 유사·중복사업을 사전에 조정

※ 중복 사례: 협의회(담당과)

- 충북교육발전협의회(정책기획관실), 충북전략산업육성위원회(전략산업과), 충북노사정위원회(경제정책팀), 충북지방고용심의회(노동부 청주지청), 충북지역혁신협의회 RHRD분과협의회(균형정책팀)

○ 신설 예정인 시·도평생교육협의회도 총괄 조정기능을 가진 인적자원개발협의회와 통합하거나 하위 분과 형태로 운영

다.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의 위상 및 기능 강화

□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법적 근거 마련(중앙)

○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지자체장이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명문화⁴⁾

※ 설치 사례는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이외 12개 시·도는 현재 발전연 구원을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로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시·도 여

4) 관점과 이해관계에 따라 또는 현실가능성을 감안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도 다수임. 그러나 지역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강함.

건에 따라 별도 독립기관으로 설치

- 협의회 운영 지원,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기획 및 조사·분석 기능
- 산업부문별 인력·기관 DB 구축,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전국 공동지표에 의한 통계 산출, 파일럿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 인큐베이터 역할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센터에 대한 경비 지원 가능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에 지정·운영(지방)

○ 지역인적자원개발이 평생교육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지역인적자원개발 센터를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운영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라. 광역경제권과 연계한 인재육성 사업의 활성화

□ 광역경제권 발전 위원회가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의 허브 역할 담당

○ 현정부의 정책기조인 분권화에 부합

-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지방 스스로의 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계기:
중앙정부는 재원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전문역량을 축적하는 계기

○ 지역이라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광역경제권의 핵심논리가 거점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면 거점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은 인재.
 - 인재의 육성을 가장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는 대학
- 광역경제권 발전 위원회를 통하면 각 부처별로 내려가는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음.
- 2008년부터 수행한 광역경제권 인재육성 사업을 확대 발전
- 광역경제권 우수 사례: 부울경 사례
- MB정부의 (초)광역경제권 구상을 적용한 범부처 최초의 사업이라는 의미
 - 교육과학기술부의 광역경제권 단위 지역인재육성 사업이 타 부처의 모범사례로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언급되는 등 관련 사업으로 전면적인 확대의 촉매로서 역할을 수행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양성사업에 다른 광역경제권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

| 성과 | 추진 내용 |
|------------------------|---|
| 광역경제권 거버넌스 구축 | - 광역시·도 단위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과 더불어 ‘다지역’이 참여하는 사업의 거버넌스 구축의 사례로서의 역할을 수행 - ‘다지역’ 거버넌스 운용에 따른 노하우 |
| 광역경제권 단위의 인력수급 시스템 구축 | - on-off에서 인력수급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여 지역 간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광역경제권 차원의 인력수급시스템 구축이 확산되도록 하고, 다른 광역경제권의 자동차·조선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에도 대응 |
| 부·울·경 주력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 - 부·울·경 공동 주력산업(자동차·조선)에 대한 광역경제권 단위의 인력양성체계 구축으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

2. 인적·물적 정책 인프라 확충

가. 지역인적자원개발 담당자 역량 강화

- 지역인적자원개발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제공(중앙)
- 지역인적자원개발 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센터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연수원 등에 지역인적자원개발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 우수 지역인적자원개발 담당자 표창(중앙)
- 지역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사기 진작 및 적극적 업무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말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도 공무원 및 센터직원 표창
- 지역인적자원개발 학습네트워크 구축(지방)
- 지역인적자원개발 우수사례 등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학습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전국·광역경제권역·광역지자체 단위의 정기 포럼 개최
 - 광역지자체 내 지역인적자원개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

나. 지역인적자원개발 정보 인프라 구축

- 지역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 정례화(지방)
- 지역에 부합하는 인적자원개발 특성화 모델을 개발하고 인프라 구축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수요조사 실시

- 지역 인력수요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인력수급 계획을 반영

- 지역인적자원개발 정보시스템(RHRD-Net) 구축

-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 전반을 포괄한 정보시스템(RHRD-Net)을 구축(중앙)
 - 지역별 인력양성기관(형식 및 비형식 교육훈련기관), 인력풀(분야별, 수준별), 인력수요처 등 DB 탑재(지방)
 -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동향 분석지 발간 및 정보시스템에 탑재(지방)

다. 지역인적자원개발 기금 조성

-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지방)

- 중앙정부의 지원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의 기반구축 및 평가·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하고, 지방정부에서 자체 사업 운영을 위한 안정적 기금 마련
 - ※ 부산의 사례: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설립·운영 및 자체 사업 실시

-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의 지역 자립도 점진적 확대
 -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을 위한 지역 기금 마련 방안 수립
 -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의 독립 기구 구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의 사례: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

기술 진흥 조례』를 제정(2003. 1)하고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및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설립·운영

3.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특성화

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인적자원개발 수행

시·도별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06~'10) 수정·보완(지방)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08.10 국회제출)으로 광역경제권별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이와 연동하여 시·도별로 기 수립된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도 수정·보완

나. 사업의 특성화

지역별로 지역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특성화(지방)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을 ①미래인재 육성, ②지역경제 활성화, ③지역 사회·문화 혁신, ④격차해소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참고: 특성화 사업별 세부내용

지자체는 사업 계획시 지역민의 수요와 지역발전전략에 의거하여 사업을 개발·운영

지역의 특수한 현안과 맞닿아 있는 지역인재육성 특성화 사업 발굴 및 추진

○ 지역인재육성의 특성화 모델 발굴

- 인재 및 인적자원에 대한 각 지역의 특수한 수요처를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인재 양성 전략 및 학습 촉진 기반 구축

특성화 모델
예시

-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선도 산업을 견인할 산업 인력 양성
- 지역의 사회 및 문화 혁신 모델: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및 잠재적 사회·문화적 자본 획득을 통한 지역 혁신, 지역 리더 양성
- 지역의 사회적 통합 모델: 지역 주민의 학습 격차를 극복함으로써 지역 통합에 기여

○ 지역인재육성 특성화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학습 촉진 기반 및 전략 구축

- 특성화 모델에 적합한 학습 단위 및 전략 구축 지원

-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 산-학-연-관 지식 클러스터 구축
- 지역의 사회 및 문화 혁신 모델: 민간 주도 지역민 학습 조직 구축 및 지원
- 지역의 사회적 통합 모델: 소외계층 대상의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 조사 정례화

- 해당 지역에 부합하는 특성화 모델 선택 및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지역민 대상의 수요 조사 정례화

4. 사업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가. 사업 성과관리·평가·환류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체계화(중양)

-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연구원 등을 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

- ※ (가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개정예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상)가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의 평가·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 고려

- 전담기관은 사업의 선정·과정·최종성과를 평가하되, 지역인적자원개발 지표의 발전정도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설계
 - 과정평가는 컨설팅을 연계하여 사업수행의 충실도 제고하고, 연도별 최종 성과평가 후 공시
 -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 성과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 초기에는 중앙 평가전담기관에서 평가 표준을 마련하고, 점차적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평가 지표 및 평가 시스템 마련

평가 결과의 환류

- 사업의 최종 성과 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우수 사업은 계속 지원(중양)

- ※ 평가결과 반영(안): 계속 지원사업은 연도별 예산총액에 따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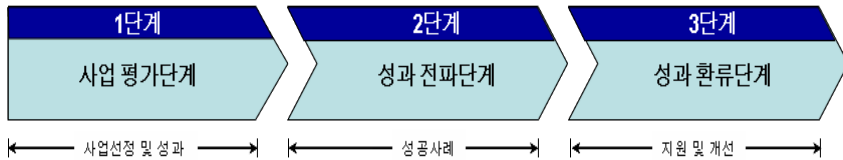
변적이나, 전년사업 대비 30% 정도, 신규사업의 지원 기간은 최
장 3년 이내

- 평가 결과를 지역발전전략에 반영(지방)

나. 사업 평가 시스템 구축

-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단계별 접근

[그림 IV-2]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성과관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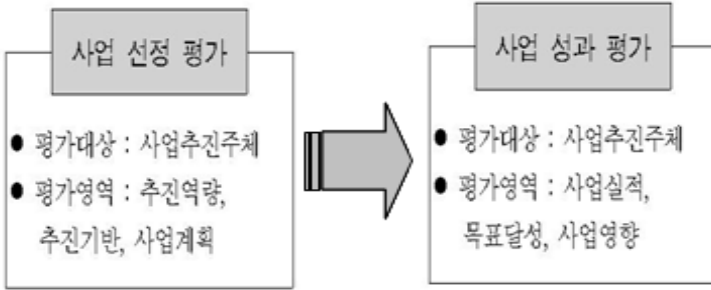


-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성과관리는 사업선정 및 성과평가를 위한 사업평가 단계,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모범적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타 자치단체에 확산하기 위한 성과 전파단계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해 지원 및 개선을 위한 성과 환류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업 평가단계

-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평가는 사업선정 평가와 선정된 사업의 성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IV-3] 사업평가 모형



- 사업선정 평가는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주체인 사업단 혹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로서, 주로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및 사업계획을 중점 평가 영역으로 설정하게 됨.
- 사업성과 평가는 사업추진 실적을 주된 평가영역으로 설정하여, 사업의 결과가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또한 사업의 영향은 어떠한 지를 주로 평가하게 됨.
- 이 모형의 경우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인재육성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 혹은 사업단의 사업추진 역량과 과정 그리고 사업성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지역인재육성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 기대효과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선정된 평가모형은 크게 평가부문으로 구성되고 평가부문은 다시 평가기준으로 구성되며, 각 평가기준은 평가항목으로 구성됨. 따라서 지역인재육성사업의 평가모형으로 이 모형을 채택하면 평가부문에는 사업추진체계역량, 사업운용과정, 사업성과의 세 부문이 구성요소

가 되고 각 평가부문은 다수의 평가기준으로 구성되며, 또한 각 평가 기준 역시 이를 구체화한 평가항목으로 구성됨.

- 먼저 사업역량부문의 평가기준으로는 조직체계, 예산관리체계, 인사관리체계의 3 가지 기준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조직의 기본요소인 조직, 인사, 재정의 3대 핵심요소를 구성요소로 설정함.
- 사업운영과정부문의 평가기준은 계획대비사업추진도, 관련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여부, 추진방식의 적절성 등 3개 기준으로 구성할 수 있음.
 - 평가기준 중 계획대비 사업추진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서 사업이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사업추진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관련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은 지역인재육성사업 관련 단체들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여타 관련부처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임.
 - 외부인력의 활용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사업결정 및 자문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 추진방식의 적절성 기준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사업대상 집단(target population)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 활동의 적절성은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위한 단체의 활동이 유명무실하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중장기적인 방향과 비전 그리고 전략을 수립하여 로드맵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선정되었음.
- 사업성과부문은 계획의 달성도, 사업효과의 수준과 범위, 사업의 영향의 3개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계획의 달성도는 단순히 기본계획서상에서 제시했던 목표들이 실제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임. 계획달성도 기준이 사업목표의 완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라면,
- 사업효과의 수준과 범위는 사업이 실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됨.
- 사업의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장기적으로 갖게 되는 파급효과 및 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정되었음.

<표 IV-1> 사업추진주체 중심모형의 평가기준 및 항목(안)

| 평가 부문 |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
|--------|-----------------|---|
| 사업추진역량 | 1. 조직관리체계 | ① 자치단체의 인적자원 개발사업 추진부서의 규모 및 위상 ② 단체장의 관심도 |
| | 2. 예산관리체계 | ① 예산관리의 체계성 ② 전체사업예산 중 지역인재육성사업예산의 비율 ③ 국고지원에 상응하는 대응투자금 확보 |
| | 3. 인사관리체계 | ① 인적자원 개발사업 관련 직무교육 ② RHRD 지원센터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고용지위 |
| 사업운용과정 | 4. 계획의 적정성 | ①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정도 ② 사업시행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③ 지역발전모델과의 적합성 |
| | 5. 관련기관과의 파트너십 | ① 외부자원의 활용노력 ② 관련단체와의 상호협조정도 ③ RHRD 협의회 운영실적 |
| | 6.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식의 목표와의 적합성 |
| | 7. 활동의 적절성 | ① 지역인재육성사업 활동의 적정성 ② 비전 및 전략, 장기과제 수립여부 |
| 사업성과 | 8. 계획 달성도 | ① 사업목표의 완수 정도 ② 사업예산 대비 사업성과의 정도 |
| | 9. 사업효과의 수준과 범위 | ① 사업성과 내용의 충실성 ② 계속사업 여부 |
| | 10. 사업의 영향 | ① 장기적 파급효과 ② 사회적 기여도 |

□ 사업 성과전파 단계

-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의 성공사례는 이러한 사업목표와 연관되어 도출될 수 있음.
- 먼저 성과차원에서는 각 자치단체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특성화를 통한 자립적, 지속가능한 사업추진, 지역우수 인재육성 성공,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 조성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음.
- 한편 이러한 성과창출을 위한 과정상의 성공사례는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위한 과업환경의 획기적 개선,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경우 성공사례는 대부분 구전(word of mouth)을 통해 전파되지만 공식적 성공실적은 성공사례 경진대회 혹은 발표회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천이 요구됨.
- 또한 주관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 및 해당 자치단체 혹은 사업단이 성공사례 관련 노하우 및 성공실천 매뉴얼 등을 발간하여 많은 자치단체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성공사례에 대한 구체적 홍보전략을 수립해야 함.
- 예를 들어 국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인재육성사업 아이디어 공

모전'을 개최하여 입상자에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입상자는 본 사업의 '주민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자문회의 참가 및 방송 토론프로그램 참여 등의 활동)

사업 성과환류 단계

- 평가결과를 공개하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시도·시·군·구)로 평가결과를 5등급 그룹화(A/B/C/D/E) 하여 공개
- 위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어 사업추진 주체가 목표달성에 매진하도록 유도해야 함.
- 먼저 인센티브는 지역인재육성사업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자치단체에게는 『지역인재육성사업 우수자치단체大賞』을 시상하고,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하며 유공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특별승급 등 적극 시행
- 사업성고가 미진한 자치단체는 평가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수준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2년 연속 하위권에 머무르는 자치단체는 그 결과를 공개하고 사업예산 지원 중단

다. 우수사례 발굴·확산

우수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자체·사업 인증(중앙)

- 지역발전전략과 결합,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자립도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인증하고, 해당 지자체의 성공 요인을 홍보

○ 연도별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중 최우수 및 우수사업 2~3개를 교과부 인증 우수사업으로 선정·발표

□ 연도별·지역별 사업성과 공시(중양)

○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연도별 성과를 정보시스템(RHRD-Net)에 공시하여, 지자체장의 지역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의지 추동

라. 사업 추진 효율화·내실화

□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조기 발표(중양)

○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을 국회 예산심의 종료 후 조기 발표

- '09년도 사업부터 추진계획을 1~2월에 발표, 사업기간을 최대한 확보

□ 사업의 점진적 지방 이양

○ 국가지원 사업의 내용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파일럿 프로그램, 성과 모니터링 중심으로 점차 축소(중양)

- 지자체 대응자금은 연도별 상향 조정하되, 재정 자립도 정도에 따라 국가 지원 및 지자체 책임의 정도를 차별화

○ 지자체는 기금 조성 등 자체예산을 확대하여 지역의 수요조사에 따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지방)

제3절 영역별 로드맵

1. 추진 체계 정비

| 추진과제 | 성과지표 | '09년 | '12년 |
|-------------------------|----------------------|---------------------------|-------------------------------|
|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편 | (가)인적자원 정책위원회 개편 | RHRD 정책 협의 채널 마련 | RHRD 정책의 부처간 협의 및 심의 가능 |
| 지역인적자원개발 총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통합 | RHRD 거버넌스 통합의 시범 사례 구축 | 실효성을 갖춘 RHRD 총괄 협의체 구성 |
| 지역인적자원 개발센터의 위상 및 기능 강화 | 지역인적자원 개발센터 법적 근거 마련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RHRD센터 조항 명문화 | 지역인적자원 개발의 허브로서 RHRD센터 위상 공고화 |

2. 정책 인프라 확충

| 추진과제 | 성과지표 | '09년 | '12년 |
|--------------------|---|------------------------------|---------------------------|
| 지역인적자원개발 담당자 역량 강화 | - 지역인적자원개발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제공 - 우수 RHRD 담당자 표창 | 중앙에 연수프로그램 개설 및 모범 사례 담당자 표창 | 지속적인 추진 |
| 지역인적자원개발 정보 인프라 구축 | - 지역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 정례화 - RHRD-NET 구축 | 수요 조사 시범 지역 실시 RHRD-NET 구축 | 수요조사 전국 확대 RHRD-NET 이용자확대 |
| 지역인적자원개발 기금 조성 | - RHRD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 | 기금 조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 안정적, 자립적 기금 조성 지자체 증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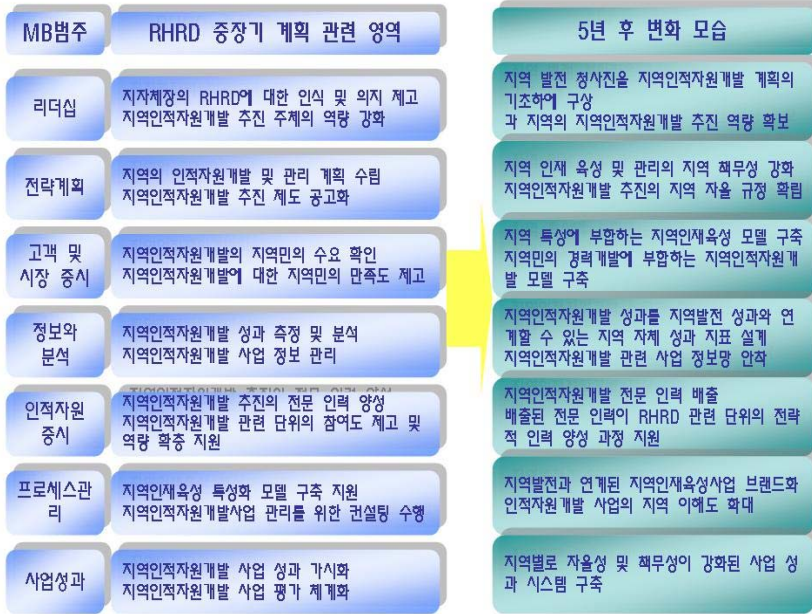
3.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특성화

| 추진과제 | 성과지표 | '09년 | '12년 |
|--------------------------|-------------------------|----------------------------------|-----------------|
|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인적자원 개발수행 | 시도별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정 및 보완 | 시도별 RHRD 기본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추진성과의 가시화 |
| 사업의 특성화 | 지역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의 지역별 특성화 | 4개 주요 특성화 시범 사업 및 파일럿 프로그램 사업 실시 | 파일럿 사업의 전국 확대 |

4. 사업 성과 관리 및 우수 사례 발굴 확산

| 추진과제 | 성과지표 | '09년 | '12년 |
|-------------------------|-----------------------------------|-----------------------------------|---------------------------|
| 사업 성과 관리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 | 사업 성과 관리 및 평가의 체계화 | 중양의 RHRD 사업 평가 지표 및 표준 마련 | RHRD 지수 공표 및 지수연동성과시스템 완성 |
|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 우수 지역 인적자원개발 지자체 사업 인증 및 사업 성과 고시 | 우수 지자체 3개 지역 선정 및 RHRD-NET에 성과 고시 | 인증사업 및 성과공시 지자체 증대 |
| 사업 추진 효율화 및 내실화 |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 조기발표 및 사업의 점진적 지방 이양 | 사업 시행 기간 최대한 확보 | 지역 자립적 사업 추진 |

[그림 IV-4] 지역인재육성의 5년 후 청사진



※ 범주는 말콤 볼드리지 평가기준(Malcom Baldrige Criteria)을 참고하여 제시.

<표 IV-2> 지역인재육성 특성화 사업(예시)

| 사업 구분 | | 세부 내용 |
|----------------|-----------------|--|
| 미래 인재 육성 | 미래인재직업 능력개발 | - 청소년 및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교육 - 청소년 및 대학생 진로개발 관련 교육 (예: 직업체험, 인턴제, 산학연계 프로그램) |
| | 미래기초능력 함양 | - 청소년 및 대학생 경제교육 - 청소년 및 대학생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예: 외국어 교육, 해외 연수) - 청소년 및 대학생 리더십 및 사회참여 교육 - 청소년 인문교육 |
| | 미래인재육성 (부분별) | - 청소년 과학인재 육성 (예: 지역 과학체험 교실) - 청소년 문화인재 육성 |

<표 계속>

| 사업 구분 | | 세부 내용 |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형성사업 | 지역 전략산업인력 양성/향상(재 교육) | - 지역, 광역경제권 전략산업 관련 인력양성(향상) - 전문인력/기능인력/보조인력 양성(향상) |
| | 국가추진 전략산업 및 제도관련 인력 양성/향상 | - 국가신성장동력산업, 전문서비스산업 관련 인력양성(향상) - 신제도 도입 관련 인력양성(향상) |
| | 지역전통산업 인력양성/향상 | - 지역 전통 장인 발굴 및 토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향상) |
| 지역사회 문화혁신 추구를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사업 | 지역사회혁신 을 위한 공무원재교육 | - 지역인적자원개발 인식제고를 위한 공무원 재교육 - 지역혁신전략 개발을 위한 공무원연수 |
| | 지역공동체재 생을위한지역 활동가양성/ 향상교육 | - 지역공동체제상을 위한 활동가 및 전문 자원봉사인력 양성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 전문가 양성(향상) |
| | 지역문화발전 을 위한 문화교양교육 | - 문화예술 도시 조성아카데미, - 신인류 신문화 창조 아카데미 - 글로벌 시민문화 아카데미 |
| 지역의 인적, 사회적 자본간 격차해소 극복사업 | 취약계층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프로그램 | - 중소기업 재직자 직업능력 향상 -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 외국인 노동자 직업능력 향상 - 여성 취약계층 직업능력 향상 -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 - 중고령자 취약계층 직업능력 향상 |
| | 취약계층 사회적응력 향상프로그램 | - 다문화가정 지원 (예: 정서지원, 통합, 문화교육 프로그램) - 신규 취업자 및 신용회복자를 위한 경제교육 - 취약계층 대상 사회참여를 위한 인문교양교육 (예: 노숙자대상 클레멘트 코스) |

주: 12개 시도의 5년간 사업구상 계획을 조사분석하여 재구성.

SUMMARY

New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nd Related Plan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Yu-Mi Son, Young-Kyoon Oh, Kyung-Hoon Koh,
Young-Seob Hyun, Mi-Sug Jin, Chang-Yong Song

In a knowledge-based society, talented individuals with creative knowledge and skills are the key element that determines not only individual but regional and national economic competitive power.

In order to increase regional self-sustainability for continuous national development, a strategy for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needed.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as emerged in policies that have been planned and visibly executed. After attempting a trial policy implementation in 3 regions 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the first time in 2002,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have collaboratively worked toward the creation of policy infrastructure (e.g. designation of a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upport Center) and the revitalization of enterprises/businesses.

There is general agreement that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up to this point have shown some progress in increasing the capacity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hich is essential for sustained regional development. At the level of regional governments, there has been valuable progress in policies as evident in: increases in human resources investments,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nd departments committed solely to issue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creases in the interest level of regional government heads, and the creation of a space in which regional stakeholders can discuss and strategize about the cultivation of and use of human talent. However, there still remain numerous issues to be resolved and new tasks to be accomplished for subsequent development.

In 2008, the start of President Lee Myung-Bak's presidency and his party taking office brought a new turning point. The system of equal distribution of financial support to regional governments was transformed in to a system of voluntary competition where regional governments must actively apply/bid for funding. It is clear that the ultimate aim of this foundational change in policy is not to simply rank the regional governments, but to promote regional autonomy in strengthening capacity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dditionally, following the government's report "New Directions and Strategy for Regional Development (2008.7.21)," follow-up reinforcements that stress the strategic role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regional development are needed. While recognizing that regional competitive strength will ultimately become national economic strength, through 1) decentralization, 2) specialization, 3)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nd 4) the actualization of 4 basic principles of the large economic blocs, a

foundation from which all regions can jump-start their development will be provided. Ultimately, wherever one lives, "Regions with guarantees of the quality of life" will be formed.

Furthermore, the need for work on providing a new development plan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new policy contexts based on the results of curren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was mentioned.

According to solutions that were suggested based on careful analyses of problems that emerg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 new approach to finding ways in which regional HRD enterprises can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regional capacity is needed.

While it is predicted that the new 'Economic Blocs' initiative will be pursued, the discovery of a new policy plan that includes the initiative as well as a new direction and strategy for regional HRD policy is necessary.

The ultimat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propose a mid-long term development plan for regional HRD by outlining the changes i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s well as the foundations of regional HRD policy.

참고문헌

- 고영선(2009). 『지역개발정책의 전략과 목표』, 한국개발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계획』.
- _____ (2009).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계획』.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 『2008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최종성과평가결과』.
- 교육인적자원부(2004).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 운영성과 분석 결과』.
- _____ (2007). 『지역경쟁력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007년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계획』.
- _____ (2007). 『2007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 계획』.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8).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 구상과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김안국 외(2005).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과 인적자원개발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중환(2008). 「지역인재육성사업 인력 역량 강화의 방향과 과제」,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방향과 과제 정책세미나 자료집』.
- 노동부(2008). 『지역고용포커스』.
- 류장수(2008). 『지역인재육성 사업설계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류장수·김중환(2008). 『지역 인재육성 사업설계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백성준 외(2005).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손창남 외(2008). 『주요국의 광역경제권 구축 사례와 시사점』, 한국은행.
- 이 성(2007). 『직선 교육감 시대 교육청의 RHRD 정책 기능 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원섭(2008). 「광역경제권 구축 방향과 과제」, 『지역경제』, 산업연구원.
- 이희수 외(2007).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방향』, 교육인적자원부.

- 전국RHRD센터협의회(2007). 『지역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 전국RHRD센터협의회.
- 최상철(2008).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비전과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현영섭 외(2008a). 『지역혁신을 위한 RHRD 추진체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08b). 『지역 인재육성사업 재설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홍영란 외(2007). 『지역별 RHRD 정책 여건 분석과 향후 발전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LEED(2005). “Local Governance and the Drivers of Growth”, OECD LEED.
- Scott, A. J.(eds.)(2001). “Global City-Regions: Trends, Theory,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Stephen J. C. & Scherer, E.(2008). “The Impact of Educational Quality on the Community”, RAND Education.

▣ 저자 약력

- 손유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오영균
- 수원대학교 교수
- 고경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현영섭
- 경북대학교 교수
- 진미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송창용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새로운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인재육성 발전 방안

- 발행연월일 | 2009년 2월 27일 인쇄
2009년 2월 28일 발행
- 발행인 | 권대봉
- 발행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5-1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화: (02)3485-5000, 5100
팩스: (02)3485-5200
- 인쇄처 | 에덴복지재단 (02)2271-3130
- 등록일자 | 1998년 6월 11일
- 등록번호 | 제16-1681호
- I S B N | 978-89-6355-032-9 93370